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섬유제품편



가이드라인 편집위원회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허혜인 과장, 이정현 연구관, 김한나 전문위원
공공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김소영 팀장, 정형우 대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정재훈 본부장, 전초현 팀장
산업계	한국화학섬유협회 정창훈 실장 한국공기청정협회 송해승 팀장 (주)휴비스 한종필 차장 삼일방(주) 강진일 이사 벤틱스(주) 박은호 이사, 박부영 대리 (주)이랜드월드 박기룡 팀장 (주)리올라이트컴퍼니 이영진 대표, 손구 상무 (주)엔바이오 정진영 CEO, 정경화 대표 자하케미칼 하상욱 대표 크린앤사이언스 최기용 팀장 (주)씨앤티스 현창화 차장 알투이랩 박다솜 책임, 박은정 과장 이노필텍 이규화 과장 효성TNC 이제우 팀장, 정희승 PM, 김종열 PM 한새 금성찬 주임
시험기관	KATRI시험연구원 이아진 책임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임준희 센터장, 천사호 수석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양홍록 팀장
전문가	(주)캠릭 김진용 대표, 김양현 연구원

CONTENTS

01

배경 및 목적

- | | |
|---------------|----|
| 1.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05 |
| 2. 가이드라인의 목적 | 07 |

02

살생물처리 섬유제품 관리 규정

- | | |
|-----------------------|----|
| 1. 용어 정의 | 09 |
| 2. 「화학제품안전법」 핵심 규정 | 13 |
| 3.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개요 | 22 |
| 4. 규제 이행을 위한 정보 확인 방법 | 34 |

03

섬유제품 유형별 이행 사항

- | | |
|-------------------------------------|-----|
| 1. 섬유제품 항균처리 개요 | 58 |
| 2. 원사·원단 제조·수입업자 이행 사항 | 61 |
| 3. 섬유 완제품 제조·수입업자 이행 사항 | 66 |
| 4.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충제 등)의 제조·수입업자 이행 사항 | 83 |
| 5. 공급망내 살생물제 정보 전달 방법 | 90 |
| 6. 통신판매업자·중개업자 이행 사항 | 96 |
| 7. 규제 불이행 시 행정 조치 | 107 |

04

오인·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 | | |
|----------------------|-----|
| 1. 부적합 광고 사례 | 111 |
| 2. 적합한 주장 및 표시·광고 방법 | 116 |

05

자주 묻는 질문 (Q&A)

118

Part

1

배경 및 목적

- 1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2 가이드라인의 목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지난 10여 년간 국내 생활환경 제품 전반에서 발생한 여러 화학물질·살생물제 관련 사고들은, 단순한 개별 사건의 나열로 볼 것이 아니라 ‘위험이 소비자의 생활공간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해 온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1)부터, 항균필터(OIT), 보존제(CMIT/MIT) 계열의 문제, 생활제품 전반의 안전성 논란(라돈 침대, 살균제의 유해성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생활제품에 처리·사용되는 화학성분이 검증 없이 유통될 경우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PHMG, PGH, CMIT/MIT와 같은 살생물물질이 생활용 분무제품 형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섬유제품에는 보존 또는 항균 처리가 이루어진 필터, 의류, 가죽류 등이 포함됩니다. 섬유제품은 피부 접촉 시간이 길고, 사용 빈도가 높으며, 필터·베개커버·침구류 등 호흡기 주변에서 사용되는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제품군을 제조·수입하는 원사 제조사뿐만 아니라 원단 및 완제품 제조·수입사 역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주체로서 「화학제품안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판매자·통신판매중개자·구매대행자도 적법한 살생물제를 취급하고 판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균 처리된 섬유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는 규제 이행을 위한 절차뿐 아니라,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보증장치 개념입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법령만으로는 살생물제 관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섬유제품 유관기관 및 제조·수입업자와 협력하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 중심 안내서로서 공동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본 안내서는 현행 법령,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된 참고 자료로써, 향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적 판단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상위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과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 향후 제도 변화 및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시	비고
가이드라인 제정	2025년 12월 31일	

가이드라인의 목적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섬유제품 공급망 전반에서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고, 산업계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섬유제품 제조·수입사, 판매·유통업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공급망 내 모든 주체가 충족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승인된 살생물물질 사용, 적절한 표시·광고 관리, 공급망 내 정보 확인·전달 등 필수적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산업 현장에서 가장 혼란이 큰 제품 분류(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를 구분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업체가 스스로 적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셋째,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부적절한 효능·효과 표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표시·광고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 방향과 사례 기반의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넷째,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및 처리제품 표시기준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산업계가 경과조치 종료 이후 발생할 리스크(미승인 제품 취급, 회수 및 판매금지 등)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대응 전략과 자율 점검 방법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은 규제 준수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만이 아닌, 섬유업계 전반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준을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지침서로서 그 목적을 갖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실무자는 본 자료를 참고하되, 관련 법령(「화학제품 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외 관련 고시 등)의 개정 내용을 반드시 병행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Part

2

살생물처리 섬유제품 관리 규정

- 1 용어 정의
- 2 「화학제품안전법」 핵심 규정
- 3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개요
- 4 규제 이행을 위한 정보 확인 방법

용어 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화학제품안전법」 및 관련 고시의 정의를 따르되, 산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제도 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살생물제 제도는 생활화학제품 제도와 법적 근거는 동일하지만, 관리 목적과 적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살생물제품을 잘못 신고하거나, 단순 처리제품을 승인대상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제도 이행의 첫 단계이자 오인·과장 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1.1 생활화학제품

1.1.1 생활화학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3호)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1.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1.2 살생물제

1.2.1. 살생물제(「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6호)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합니다.

1.2.2. 살생물물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7호)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1.2.3. 기존살생물물질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로서 제조자나 수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한 물질을 말합니다.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이, 기존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법 부칙제3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1.2.4. 살생물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1.2.5. 살생물처리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9호)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1.3 제품의 목적 및 기능 구분

1.3.1. 제품의 주된 목적(살생물제품)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의 건강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하는 경우

1.3.2. 제품의 부수적 목적(살생물처리제품)

제품에 살생물 처리를 하였지만, 제품의 부수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자체의 보존이나 보호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부분)
-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있지만 주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3.3. 제품의 살생물기능

제품이 가진 여러 기능 중 하나로서, 제품 이외의 대상(제품 사용자 등)에 대한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을 말합니다.

1.3.4. 제품의 주기능

제품의 여러 기능 중에서 해당 기능이 없을 경우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기능 또는 다른 기능에 비해 특별히 강조한 기능을 말합니다.

1.3.5. 제품의 보호

제품에 대한 살생물처리의 효과를 뜻하며, 제품 자체의 부패 방지나 제품 자체에 대한 세균과 곰팡이의 성장 억제 등을 말합니다.

※ 제품의 보호 효과는 제품 외부에 대한 영향이 없으므로 제품의 살생물 기능으로 보지 않음

1.4

제품의 광고 및 주장

1.4.1. 광고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 살생물제의 정보, 사용 용도,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4.2. 주장

광고나 표시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사용 지침이나 매뉴얼과 같은 정보에 포함된 문구, 표 또는 그림을 주장이라 합니다. 특히 효과·효능에 대한 주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 제품이 유해생물 또는 원치 않는 생물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보호되고 있는지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것
- 제품이 유해생물 또는 원치 않는 생물에 대해 특정 효능 또는 작용이 있는지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것

1.4.3.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제품에 대한 주장 중에서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을 제거 또는 억제하여 제품의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과 안전상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확히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주장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핵심 규정

2.1 목적 (「화학제품안전법」 제1조)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2 적용 범위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합니다.

〈적용 범위 제외 항목〉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통상품)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
6.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품외품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품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2.4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 10조제1항~제5항)

「화학제품안전법」 제7조(실태조사)와 제8조(위해성평가)를 바탕으로 안생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안생품의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거나,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법 제8조 등에 따라 위해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은 안생품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법령 체계에 따라 안생품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위해성평가 결과 그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안생품으로 지정·고시 전에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제품내 함량, 용기·포장·중량, 어린이보호포장 등) 적합 여부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3년마다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4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6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지정된 안생품중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법 제10조제6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신고·승인대상 안생품의 살생물제품 승인(「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 등)

현재는 안생품에 해당하는 제품이지만,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면 살생물제품 유형별 유예기간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신고대상 안생품의 경우에는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가 있으며,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는 '25년 12월까지, 목재용 보존제는 '26년 12월까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승인대상 안생품에 해당하는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는 모두 '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안생품으로서 신고했거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면 승인유예기간내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유예기간이후에는 더 이상 안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2.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8항)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8항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반드시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한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기재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한글 활자의 크기가 더 크게 표시하여야 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공통 표시사항〉

• 품목	• 액성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 제품명	• 표준사용량	• 신호어 및 그림문자
• 용도	• 효과 효능(승인대상)	• 사용방법
• 제형	•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 사용상 주의사항
• 제조연월	• 판매자, 주소, 연락처	• 응급처치
• 유통기한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제품)	• 안전기준확인 마크
• 중량 용량 매수·크기	•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제품)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 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2.7 살생물물질의 승인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1항)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참조)

2.8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화학제품안전법」 제13조1항)

물질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질승인의 신청〉

1.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
4.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라. 효과·효능
 - 마. 분류 및 표시
5.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그러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2.9 살생물제품의 승인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1항)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제품승인의 기준〉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 가. 물질승인 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2.10 살생물제품의 표시 (「화학제품안전법」 제27조)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11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기간이 지나면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수입제품의 경우 유사성 기준을 충족) 사용해야 하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살생물처리제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승인 물질 포함),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의 적법 여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제도이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유사성 기준 :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국내 승인된 물질로 승인된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 등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2. 그 밖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12 살생물처리제품 표시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2항)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사항〉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또한, 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이 살생물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의 광고 문구는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섬유에 번식할 수 있는 세균·진균 등의 성장을 억제하여 제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으로 제품에 살생물제품을 처리했음에도, ‘곰팡이·세균 번식 억제 침구류’, ‘항균 의류’와 같은 직접적인 주장은 제품의 주된 목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불법제품이 될 수 있으니, ‘항균 처리된 침구류’, ‘항균 처리된 의류’ 등과 같이 간접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광고 제한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광고 제한〉

1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추출(자연에서 유래·추출한 물질명·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 인체·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문구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제품의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해당시)
- 살생물제품 승인번호(해당시)

3

또한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개요

3.1 도입 배경

「화학제품안전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2011)과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의 유·위해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품이 제조·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2 살생물제 관리체계의 구조

3.2.1. 살생물제 체계의 기본 개념

살생물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이는 이후 규제 의무 적용의 기초가 됩니다.



이 구분은 제품의 목적, 기능 주장 여부, 사용된 성분에 따라 명확히 달라지며, 규제 의무 역시 이 구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2.2. 살생물제품과 처리제품의 구분

(1) 살생물제품

살생물기능이 주된 목적에 해당하여 살생물제품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구분	설명
질병예방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의 질병 예방 등의 효과 를 주장하는 경우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 를 주장하거나 통칭하여 ‘질병 예방’ 을 주장
특정 유해한 생물 제거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생물의 종류를 명시하거나 해당 생물을 제거한다는 등의 주장 을 하면서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암묵적 주장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항균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암묵적으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② 살생물 기능이 주기능인 경우

구분	설명
가	제품에서 살생물 기능이 없으면 제품의 가치 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 (살균, 소독, 살충, 방충 등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
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유일한 기능 인 경우
다	제품의 명칭 또는 명칭의 위치 에 항균이나 방충 등을 뜻하는 유사 용어 (제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항진드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
라	살생물 기능을 주장하면서 99.9% 제거 등 구체적인 효능 을 주장하는 경우
마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 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 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 되는 경우

(2) 살생물처리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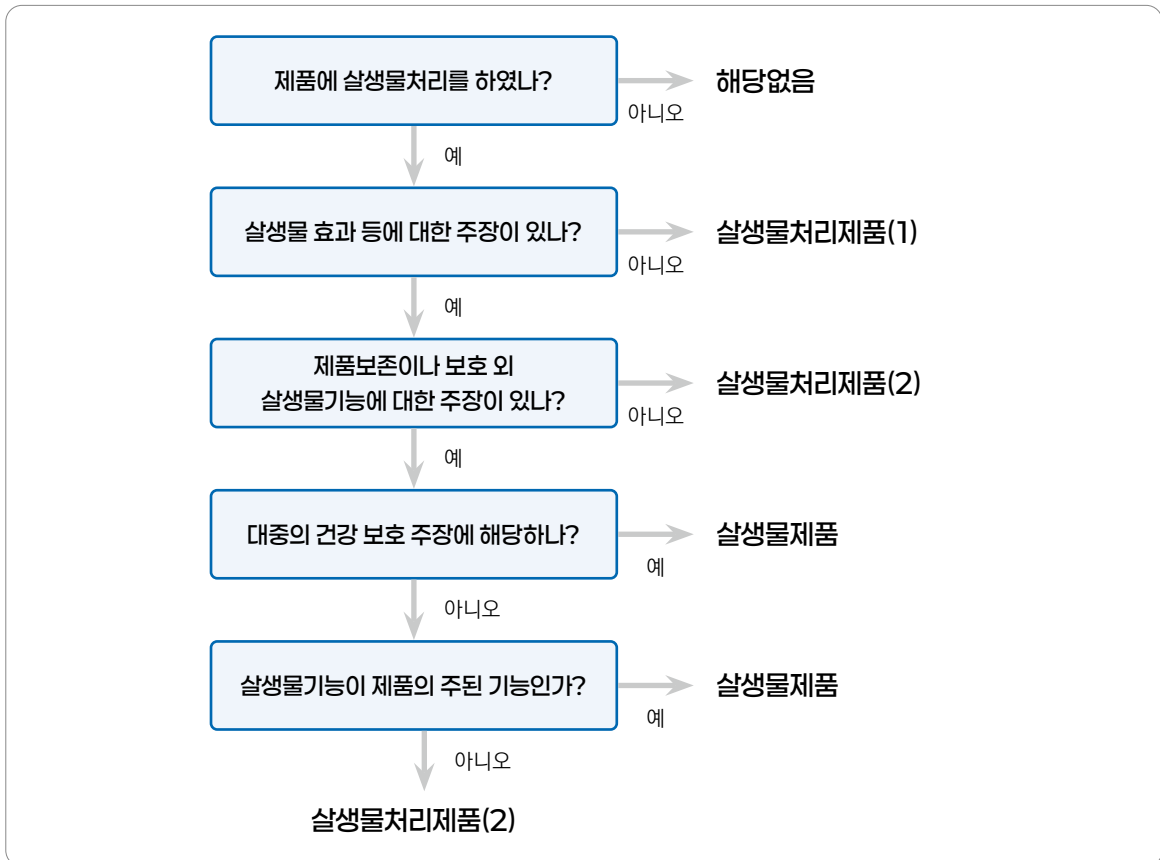
살생물 기능에 관한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살생물처리를 하였으면, 살생물처리제품이 됩니다. 만약 살생물처리제품이 가진 살생물 효과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싶다면, 대중의 건강보호 등 살생물제품이 되는 주장은 하지 않아야 하고 단지 제품보호를 위하여 살생물처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은 아래의 순서도에 따라 구분하면 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다음과 같으며, 제품 구분에 따라 법적 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1)	살생물처리는 하였으나 어떠한 효과 주장도 없는 제품(섬유제품의 겉면에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처리가 되어 있지만, 항균처리에 대한 어떤 광고나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살생물처리제품(2)	살생물처리를 하였고, 그 효과를 주장하는 제품("항균처리를 하여 섬유제품에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등과 같은 광고·주장이 있는 경우)



3.2.3. 살생물제 종류별 법적 관리기준 및 적용 범위

(1) 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은 제품유형에 적합하게 승인받은 살생물물질만을 사용하여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아야함
-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① 살생물제품 판매 이전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품 시장 출시전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의 유형별 승인유예기간내 제품 승인(법 제20조제1항)
- 살생물제품의 사용 시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포장 등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준수(법 제20조제2항6호)
- 구매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정해진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법 제27조)
-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살생물제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표시·광고에 사용하면 안되고,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위해 방지를 위한 문구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광고에 기재(법 제34조제1항)

② 살생물제품 판매 이후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고 제품 겉면 또는 포장 등에 제품 정보 등을 적합하게 표시하여 판매하는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의 새로운 유·위해성,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법 제36조)
-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수량, 함유 살생물물질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을 기록(전자문서 포함)하고 10년간 보관(법 제49조제1항)
-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함유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함량을 2년마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보고(법 제49조제2항)

(2) 살생물처리제품

- 살생물처리제품의 법적 의무는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이 지나면 바로 적용되므로 미리 준비 필요
- 한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주장(항균, 살균 등)을 하면 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25년 12월 전에 부적절한 표시·광고 개선 필요

① 공통 의무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품 시장 출시전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용도 등 승인받은 범위에 맞게 사용(법 제28조)
- 처리제품 구매자 요청 시 사용된 살생물제품 정보 제공(법 제30조)
- 살생물제(물질, 제품, 처리제품)의 새로운 유·위해성, 효과·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법 제36조)

② 표시 의무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상기의 공통 의무 이외에 추가적으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정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은 승인 단계에서 처리제품에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경우는 효과나 효능을 주장하지 않는 살생물처리제품이라도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 단계에서 표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존제 등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시 주의사항(알러지 유발물질,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함량 제한 등) 등을 처리제품에 표시하는 조건으로 승인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제품정보에 대한 표시는 제품의 겉면에 합니다. 만약, 제품 겉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품 포장, 첨부문서, 라벨 또는 태그(꼬리표)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일부분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하거나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과 기본 규제 체계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에서는 이러한 승인·표시 의무가 기존에 이미 시장에 유통되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어떻게 단계적으로 적용되는지를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3.3 기존살생물질 승인유예제도 개요

살생물질·제품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19.1.1.~) 이전부터 국내 시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산업계 및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살생물질 승인유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해당 물질이 승인을 받기 위한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승인을 받은 살생물질만 제조·수입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가 사용하는 살생물질이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승인 완료 또는 대체물질 전환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존살생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

유예기간	물질*	I 그룹 ~ '23년	II 그룹 ~ '24년	III 그룹 ~ '27년	IV 그룹 ~ '29년
	제품**	~ '25년	~ '26년	~ '29년	~ '31년
살생물제품 유형		•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살충제 •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체·박제용 보존제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현장발생형 살생물질 및 미생물 살생물질의 경우 '29년 12월 31일까지 승인 유예

**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25.12.31 개정)

기존살생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제품유형별로 서로 다르게 부여되며, 살생물제품은 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살생물처리제품은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의 구조로 운영됩니다. 다만, 살생물제품의 경우 살생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품 승인유예기간 내 해당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살생물제품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 제품에 어떤 살생물질·제품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물질·제품이 어느 유예그룹에 속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살생물질의 안전성 검증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 사용 과정에서의 노출 정도 및 효능 또한 평가하여 안전한 시장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섬유제품 제조·수입사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사용 중인 **보존제 내 살생물물질의 유예기간 종료 시점 또는 승인 여부 확인**
2. 해당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의 유예기간 종료 시점 또는 승인 여부 확인**
3. 승인된 살생물제품만을 승인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리체계 마련
4. 만약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유예기간 내 **전환·대체 계획** 수립

이와 같은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해당 물질 및 제품 사용이 금지되므로 공급망 단계별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 대상(자) 별 법적 의무 사항〉

법적 의무자	대상	법적 의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	국내 유통·판매 살생물물질	유형별 기간 내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	국내 유통·판매 살생물제품	유형별 기간 내 살생물제품 승인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	국내 유통·판매 살생물처리제품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사용 등 안전·표시기준 준수
기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유통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목록에 없을 시 신규 신고

3.4 제도 시행 이후 추진 경과(2019~2025)

앞서 설명했듯, 「화학제품안전법」의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존에 유통되던 살생물물질의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살생물물질신고**’ 및 ‘**승인유예제도**’가 운영되었으며, 이후 물질 승인, 제품 승인,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 적용 순서로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인유예기간이 제품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기업은 유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미승인 물질 대체, 표시·광고 관리 등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제도의 주요 진행 흐름을 정리한 표입니다.

(1) 법령

2019년

- ▶ ('19.1.1.)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18년12월31일 이전 유통 살생물물질 →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 시 승인유예 부여

2020년

- ▶ ('20.3.24)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 공개 규정 신설, 기존살생물물질 상시 신고제도, 포상금 제도,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도입 등

2021년	▶('21.1.1.) 하위법령 개정·시행 → 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질관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한시적 승인면제 절차, 신고·승인 사항과 다른 효능 표시·광고 금지 등 규정 신설
2025년	▶('25.12.31.) 부칙 개정·시행 →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

(2) 살생물물질

2019년	▶(~'19.6.30.) 기존살생물물질 827종 신고완료 ▶('19.11.15.)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673종 행정예고 ▶(~'19.12.11.)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신고기간 운영 ▶('19.12.31.) 기존살생물물질 741종 최초 고시 → 살생물물질 제 조·수입자에 승인물질/승인유예대상 기존물질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20년	▶('20.8.24.) 기존살생물물질 743종 고시 개정 ▶('20.12.31.) 신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021년	▶('21.1.26.)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위임(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 ▶('21.6.25.)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2022년	▶('22.1.2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22.6.15.)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22.12.30.)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제품유형의 기존살생물물질 중 48종 승인 물질 목록 발표
2023년	▶('23.1.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23.12.3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유형의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56종 승인)
2024년	▶('24.1.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4.4.30.)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24.12.3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유형의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2025년	▶('25.1.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3) 살생물제품

2024년

- ▶ ('24.12.3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유형 15개 첫 승인
 - ▶ ('24.12.31.) 미승인(~'23.12.31) 살생물물질들을 함유한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는 '24년12월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 ※ 다만,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조·수입금지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둘 중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까지만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가능하므로, 24년 12월 이전이라도 제조·수입금지 제품 존재

2025년

- ▶ ('25.6.30.) '23년 12월까지 미승인된 살생물물질들을 함유한 살균제·살조제·살충제·기피제는 '25년 6월까지만 판매·유통 가능
 - ▶ ('25.12.31.) 미승인(~'24.12.31) 살생물물질들을 함유한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는 '25년 12월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 ▶ ('25.12.3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197개 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및 구제제로 신고·승인된 제품이라도 이때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 다만,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 승인유예기간 지속(~'26.12.31)

3.5 향후 규제 이행 주요 일정(2026~2033)

※ 섬유업계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일정

(1) 살생물물질

2027년

- ▶ ('27.12.3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유형의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2028년

- ▶ ('28.1.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29년

- ▶ ('29.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유형의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 ▶ ('29.12.31.) 현장발생형·미생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

2030년

- ▶ ('30.1.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 ('30.1.1.) 승인된 현장발생형·미생물 기존살생물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 살생물제품

2026년	▶ ('26.1.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하는 의무 시작 ▶ ('26.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필터, 섬유 등의 제품이라도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 ('26.7.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26.12.3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
2027년	▶ ('27.1.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27.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목재 등의 제품이라도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 ('27.7.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28년	▶ ('28.12.31.) 미승인(~'27.12.31)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 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는 '28년 12월 31일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2029년	▶ ('29.12.3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승인유예기간 종료
2030년	▶ ('30.1.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는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0.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액상 제품, 섬유, 의류, 가죽, 플라스틱 등의 제품이라도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 ('30.7.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0.12.31.) 미승인(~'29.12.31)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는 '30년12월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 ('30.12.31.) 미승인(~'29.12.31) 현장발생·미생물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30년12월까지만 제조·수입 가능

2031년

- ▶ ('31.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
- ▶ ('31.12.31.) 현장발생형·미생물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



2032년

- ▶ ('32.1.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 ('32.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건축자재, 재료나 장비, 박제물, 선박 등의 제품이라도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 ▶ ('32.7.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단, 부칙 개정('25.12.31.)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이 1년 추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3) 살생물처리제품

2027년

- ▶ ('27.12.3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기한 종료
- * 다만, 공산품 등 일반적인 제품에 살생물처리를 할 때에는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할 일이 없으며, 대부분 보존제로 처리함



2028년

- ▶ ('28.1.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 ('28.7.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 ('28.12.3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기한 종료



2029년

- ▶ ('29.1.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 ('29.7.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31년	▶ ('31.12.3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기한 종료
2032년	▶ ('32.1.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2.7.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2033년	▶ ('33.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던 경과조치 기한 종료
2034년	▶ ('34.1.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는 의무 시작 ▶ ('34.7.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만 판매·증여·유통해야 하는 의무 시작

※ 단, 부칙 개정('25.12.31.)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승인유효기간이 1년 연장된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적용 또한 함께 연장된 것으로 판단해야 함

규제 이행을 위한 정보 확인 방법

4.1 정보 확인 방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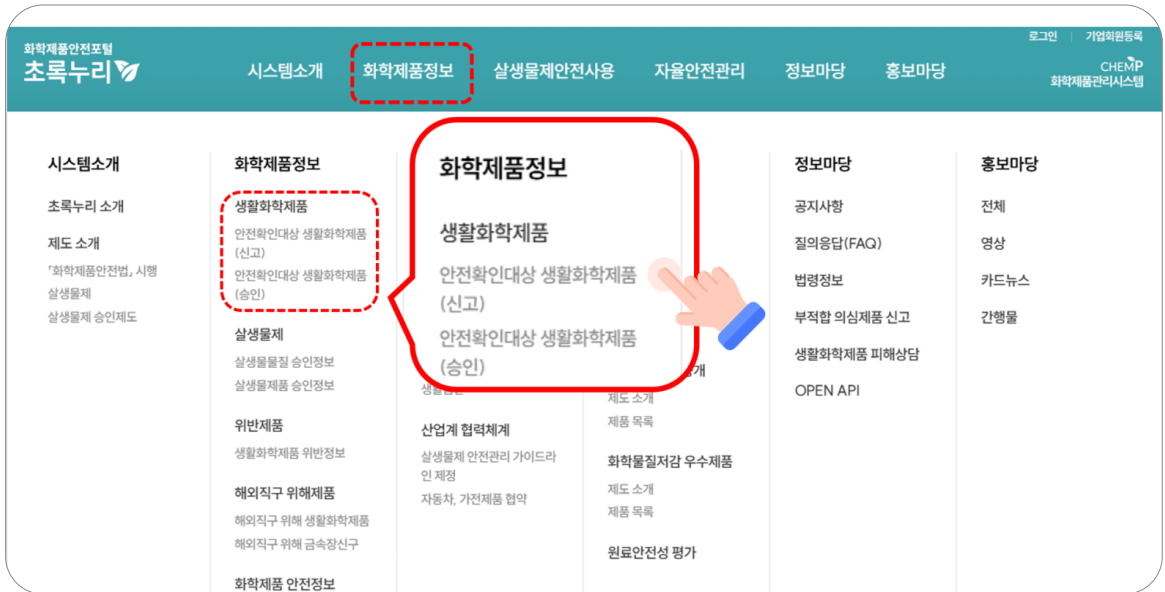
4.2.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 여부

현재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 또는 승인된 제품은 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 <https://ecolife.mcee.go.kr/ecolife/main>)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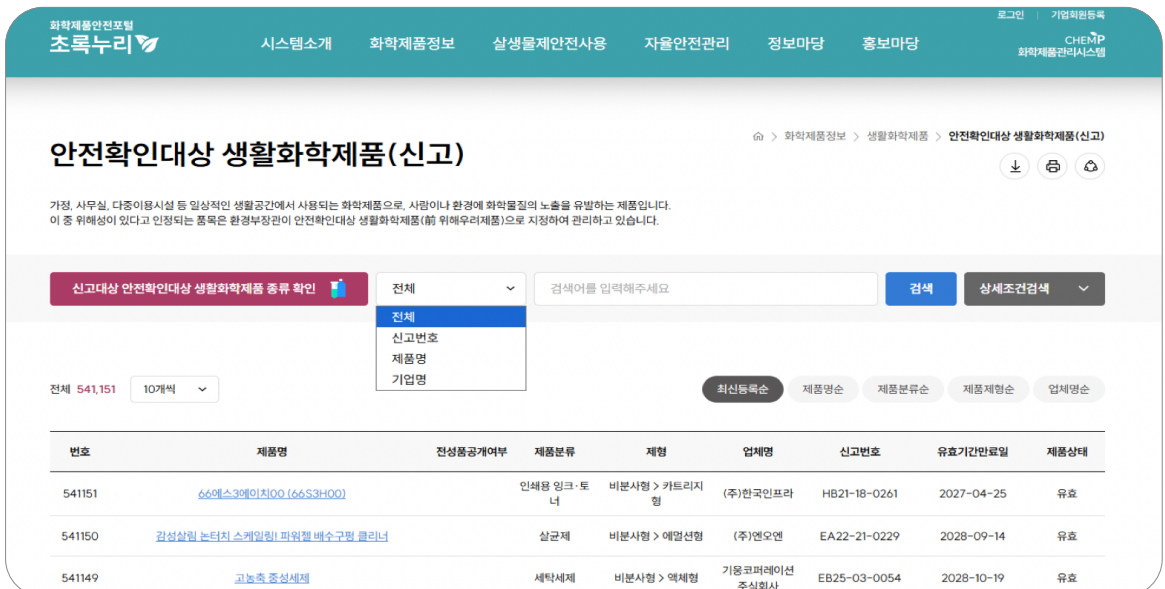
(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먼저 초록누리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포털에서는 신고 및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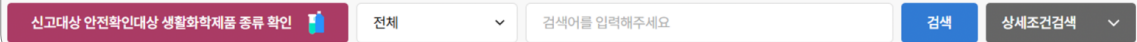


화면 상단 목록에 있는 [화학제품정보]에 커서를 올린 후, 하위 메뉴 중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제품 신고정보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품 검색은 신고번호, 제품명, 기업명을 활용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을 선택하면 제품 유형과 용도 등의 제품정보와 사용된 화학물질의 정보 등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이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前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 > 화학제품정보 >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하는 제품입니다. 이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前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6

① 선택한 제품의 제품정보

제품정보	물질정보	변경이력정보
• 제품정보		
제품명	얼그레이앤큐럼버 사워	
분류	방향·탈취제품	
품목·용도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일반용 (실내공간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비대상	
제품제형	고체형	
유통기한	해당없음	
중량·용량·매수·크기	25 g	
어는점	해당없음	
액성	해당없음	
표준사용량	해당없음	
제조사, 주소, 연락처	마노델아르떼 주식회사, (166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55, 공장동 2층 201호 (신동), 0507-1381-1817	
사용방법	향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세요.	
사용상 주의사항	① 제품을 던지지 마시오. ② 제품의 포장을 임의로 바꿔 사용하지 마시오. ③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④ 흡입하거나 마시지 마시오. ⑤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응급처치	①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②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즉시 물로 씻고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오.	

② 선택한 제품의 물질정보

제품정보

물질정보

변경이력정보

◦ 물질정보

주요물질	질석, 향료(리나릴 아세트산 등)
화학물질의 정보	질석  , 향료(리나릴 아세트산 등)
보존제	정보없음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리날도올, 제라니올
계면활성제	정보없음
형광증백제	정보없음
기타물질	정보없음
신호어 및 그림문자	표시 도안 보기 

③ 선택한 제품의 변경이력정보

제품정보		물질정보		변경이력정보		
번호	제품명	품목	업체명	발급구분	성적발급구분	신고증명서 발급일
1	마노델아르메 사채	방향제	마노델아르메 주식회사	대표	증명서 만료	2022-11-09
2	일그레이엔류컴버 사채	방향제	마노델아르메 주식회사	파생	증명서 만료	2022-11-22
3	일그레이엔류컴버 사채	방향제	마노델아르메 주식회사	파생갱신	증명서 발급완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승인)

화학제품정보 > 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승인)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하기 전 승인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생물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기간 동안에만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될 예정이므로, 경과조치 적용기간 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획득하여야 계속하여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승인정보

승인번호	2722-0006
승인일자	2022-02-25
구분(제조/수입)	제조
업체명	주식회사 로타

검색된 제품명을 클릭하면 제품 상세정보 화면이 표시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승인번호, 승인일자, 구분(제조/수입), 업체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구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선택한 제품의 제품정보

제품정보	물질정보														
◦ 제품정보 <table> <tr> <td>제품명</td><td>주식회사로타제매액(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td></tr> <tr> <td>품목</td><td>7.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td></tr> <tr> <td>제품제형</td><td>열은 무색의 투명한 액</td></tr> <tr> <td>저장방법 및 유통기한</td><td>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제조일로부터 24개월</td></tr> <tr> <td>중량·용량·매수</td><td>15 mL, 35 mL, 500 mL, 1 L, 4 L, 20 L</td></tr> <tr> <td>용법·용량</td><td>정보보기</td></tr> <tr> <td>사용상의 주의사항</td><td>정보보기</td></tr> </table>		제품명	주식회사로타제매액(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품목	7.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제품제형	열은 무색의 투명한 액	저장방법 및 유통기한	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중량·용량·매수	15 mL, 35 mL, 500 mL, 1 L, 4 L, 20 L	용법·용량	정보보기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보보기
제품명	주식회사로타제매액(8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1:1)액)														
품목	7.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제품제형	열은 무색의 투명한 액														
저장방법 및 유통기한	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중량·용량·매수	15 mL, 35 mL, 500 mL, 1 L, 4 L, 20 L														
용법·용량	정보보기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보보기														

② 선택한 제품의 물질정보

제품정보	물질정보
◦ 물질정보	
주성분	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0.0865 그램)
부성분	폴리옥시에틸렌라우릴에테르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 정제수 / 탄산나트륨

4.2.2. 적법한 살생물물질 여부

(1) 승인된 살생물물질 확인 방법

현재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4조(살생물물질의 승인 등) 및 제 18조(살생물제품의 승인)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부칙에서 정한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대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살생물물질 또는 승인유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동법 제41조(벌칙) 및 제42조(과태료)에 따라 불법 제품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제품이 ① 승인 완료 물질-제품인지, ②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대상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https://chempold.keiti.re.kr>)에 접속하여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의 승인번호, 유예대상 여부, 신청 진행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 구축 완료시 <https://ecolife.mce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기업은 편리한 민원처리, 국민은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기존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등의 신고·승인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대상 생활화학
제품 제품신고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물질승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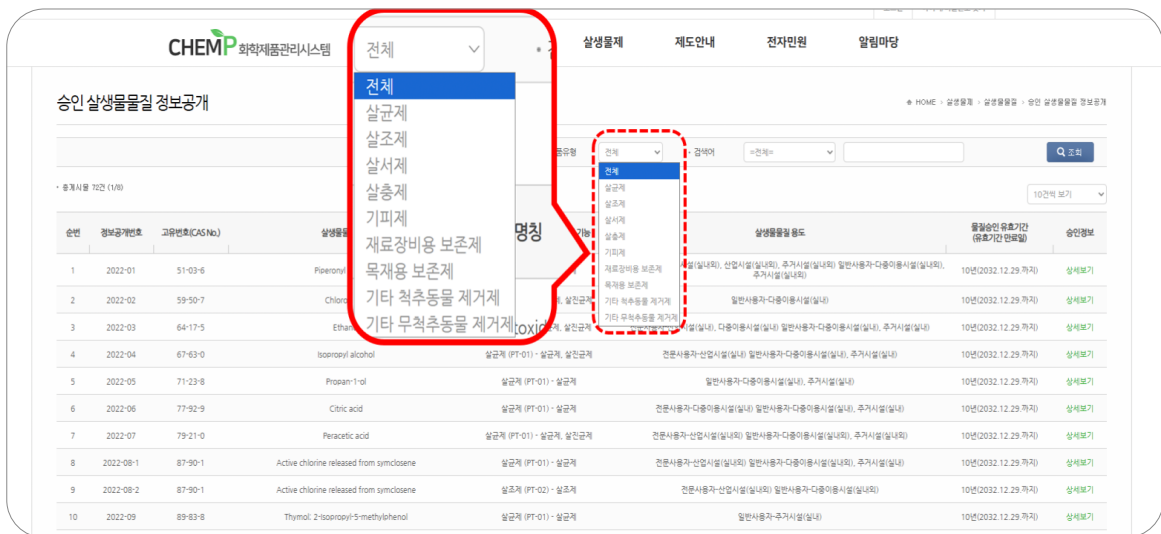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종합자료실

바로가기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접속하면 해당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살생물제] 항목에 커서를 올린 뒤, 하위 목록에서 [승인살생물물질 정보공개]를 클릭하여 승인된 살생물물질 목록을 조회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승인된 살생물물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제품의 제품 유형을 선택하고, 그 옆 검색어에서 원하는 제품 유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CAS No., 살생물물질 명칭, 상호명 및 정보공개번호를 입력하여 원하는 물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물질의 정식 명칭, CAS 번호,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 유형 및 기능 등과 같은 승인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살생물물질 정보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공개

HOME > 살생물제 > 살생물물질 >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공개

살생물물질 정보

정보공개번호	2022-01
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제품안전법 제29조 제1항제1호)	Piperonyl Butoxide
고유번호 (CAS No.)	51-03-6
사용이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 및 기능 (화학제품안전법 제29조 제1항제4호)	살충제 (PT-05) - 살충제
물질승인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화학제품안전법 제29조 제1항제1호)	10년(2032.12.29.까지)

② 공개정보

공개정보

살생물물질의 용도	전문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외), 산업시설(실내외), 주거시설(실내외)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외), 주거시설(실내외)
분류 및 표시 (화학제품안전법 제29조 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2호)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3(호흡기 자극)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구분 1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구분 1
신호어 (Signal word)	경고
유해·위험 문구 (H codes)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 문구 (P Codes)	P261 -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십시오. P304+P340 -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십시오. P403+P233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십시오.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 유해성 정보 및 위해성 정도(화학제품안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화학제품안전법 제29조제1항제3호) 

>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자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화학제품안전법 제29조제1항제3호) 

그 외에도 오른쪽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③ 유해성 정보 및 위해성 정도, ④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 ⑤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자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승인된 살생물제품 확인 방법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 변경승인/변경신고	기존살생물물질 물질승인 신청제지서 제출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물질동등성 인정신청 착주동물 시험자료 부동의 확인 신청 산업예입신청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살생물물질 변경신고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공개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살생물제품군 승인신청 제품승인 특례신청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착주동물 시험자료 부동의 확인 신청 산업예입신청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산업계지원 데이터검분석 유해성시험자료 교육·실무가이드 지원사업	권라·의무 승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조수입량보고 제조수입량보고 일괄 등록 수출의 언더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살생물제품군 승인신청 제품승인 특례신청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착주동물 시험자료 부동의 확인 신청 산업예입신청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권라·의무 승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조수입량보고 제조수입량보고 일괄 등록 수출의 언더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살생물제품군 승인신청 제품승인 특례신청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착주동물 시험자료 부동의 확인 신청 산업예입신청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종합자료실 공지사항 FAQ 자료실 시스템소개 수수료안내 법령정보		

이번에는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어있는 항목에서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항목을 클릭합니다.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인원
알림마당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HOME
>
살생물제
>
살생물제품
>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계통유형
전제
검색어
전제=

* 총개수 82건 (1/7)

10건씩 보기

순번	경보공개번호	살생물제품명칭	살생물물질명칭(CAS No. 함량)	사용가능한 살생물제품 유형 및 기능	사용자 범위	승인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승인정보
1	2025-01	바스핀스리	클로로펜(Clorofene (CAS No. 120-32-1, 13.1%w/w) 2-페닐놀/8-phenyl-2-ol (CAS No. 90-43-7, 6.1%w/w)	살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사용자)-산업시설-실내	10년(2035.12.30 까지)	상세보기
2	2025-02	알피메이지스리	클로로펜(Clorofene (CAS No. 120-32-1, 13%w/w) 2-페닐놀/8-phenyl-2-ol (CAS No. 90-43-7, 6%w/w)	살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사용자)-산업시설-실내	10년(2035.12.30 까지)	상세보기
3	2025-03	원슬루션엑스핀스리	클로로펜(Clorofene (CAS No. 120-32-1, 13.1%w/w) 2-페닐놀/8-phenyl-2-ol (CAS No. 90-43-7, 6.1%w/w)	살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사용자)-산업시설-실내	10년(2035.12.30 까지)	상세보기
4	2025-04	원슬루션알피메이지스리	클로로펜(Clorofene (CAS No. 120-32-1, 13%w/w) 2-페닐놀/8-phenyl-2-ol (CAS No. 90-43-7, 6%w/w)	살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사용자)-산업시설-실내	10년(2035.12.30 까지)	상세보기
5	2025-05	막상투락 보호 폼스 타벨릿 (ROProtect C)	이염화이소시아누레이트 나트륨 이수화물 유리 활성염Δ/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odium dichloroisocyanurate hydrate (CAS No. 51580-86-0), 80.77% w/w (as Active chlorine 43.8% w/w)	살균제	전문사용자(전문가)-산업시설-실내	10년(2035.12.30 까지)	상세보기
6	2025-06	엑트릴라제이로를 우탈	프탈라트린(Pthalathrin (CAS No. 23031-36-9), 0.100% w/w 디-페노트린/d-Phenothrin (CAS No. 26002-80-2), 0.125% w/w	살충제	일반사용자-주거시설/다중이용시설-실내	10년(2034.12.30 까지)	상세보기
7	2025-07	세틱스알류300리퀴드	브로마디올론(Bromadiolone (CAS No. 28772-56-7), 0.021% w/w	살서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실외	3년(2027.12.30 까지)	상세보기
8	2025-08	세틱스알류310리퀴드	브로마디올론(Bromadiolone (CAS No. 28772-56-7), 0.025% w/w	살서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실외	3년(2027.12.30 까지)	상세보기
9	2025-09	세틱스알류320리퀴드	브로마디올론(Bromadiolone (CAS No. 28772-56-7), 0.029% w/w	살서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실외	3년(2027.12.30 까지)	상세보기
10	2025-10	세틱스알류300리퀴드	브로마디올론(Bromadiolone (CAS No. 28772-56-7), 0.005% w/w	살서제	전문사용자-다중이용시설/산업시설-실내/실외	3년(2027.12.30 까지)	상세보기

1 2 3 4 5 6 7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 조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하는 제품 유형과 검색어를 입력하여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의 승인번호, 승인 유효기간, 살생물제품유형 등의 승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살생물제품 정보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HOME > 살생물제 > 살생물제품 > 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

> 살생물제품 정보

정보공개번호	2025-01
제품명	베스핀쓰리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0124-0001
승인의 유효기간	10년(2035.12.30 까지)
살생물제품의 승인정보	일반 승인제품(●)/특례 승인제품(○)/한시적 승인제품(○)/제품유사성 인정제품(○)/최초승인후 재승인제품(○)
살생물제품유형	살균제
사용 대상자, 사용지 범위	전문사용자(산업시설사용자)-산업시설-실내
효과·효능	산업시설 표면 살균 (비다공성)
표준 사용량	29.58mL(1 oz)에 물 3.79L(1 gal) 를 희석하여 사용
사용방법	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1:128 비율로 희석하여 희석액을 천, 대걸레 등의 도구에 충분히 적신 후 사용하며, 살균이 필요한 표면에 10분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29.6mL 사용 시, 공간 청정도에 따라 30-100㎡ 면적 사용 가능).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살생물제품 제형	Dispersible concentrate(DC)
중량·용량·매수	59.1mL (2oz)
살생물제품 수입자(주소, 연락처)	(주)영사이언스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아이티 301동 1304호, 070-5007-9224)
제조사(제조국)	STERIS Corporation (USA)

② 안전사용정보

안전사용정보	
제품성분	살생물물질명 (CAS No., 함량) 클로로펜/Clorofene (CAS No. 120-32-1, 13.1%w/w) 2-페닐페놀/Biphenyl-2-ol (CAS No. 90-43-7, 6.1%w/w)
	위해우려물질 수산화칼륨(Potassium hydroxide),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인산(Phosphoric acid)
	나노물질 해당 없음
분류 · 표시 신호어 위험 	유해성분류 급속부식성 - 구분 1 급성독성 경구 - 구분 4 피부 부식성 - 구분 1 심한 눈 손상 - 구분 1 피부 과민성 - 구분 1 발암성 - 구분 2 생식독성 - 구분 2 특정표적 장기독성(반복노출) - 구분 2 수생환경 유해성(만성) - 구분 1
	유해 · 위험문구 H290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H302 삼키면 유해함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51 염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61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71 장기(5주)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410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P234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십시오. P235 저온으로 유지하십시오 P260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P261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십시오.

물리화학적 특성 정보

유해성 정보 및 위험성 정보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살생물제품 재승인 단계 고려사항

변경승인 및 신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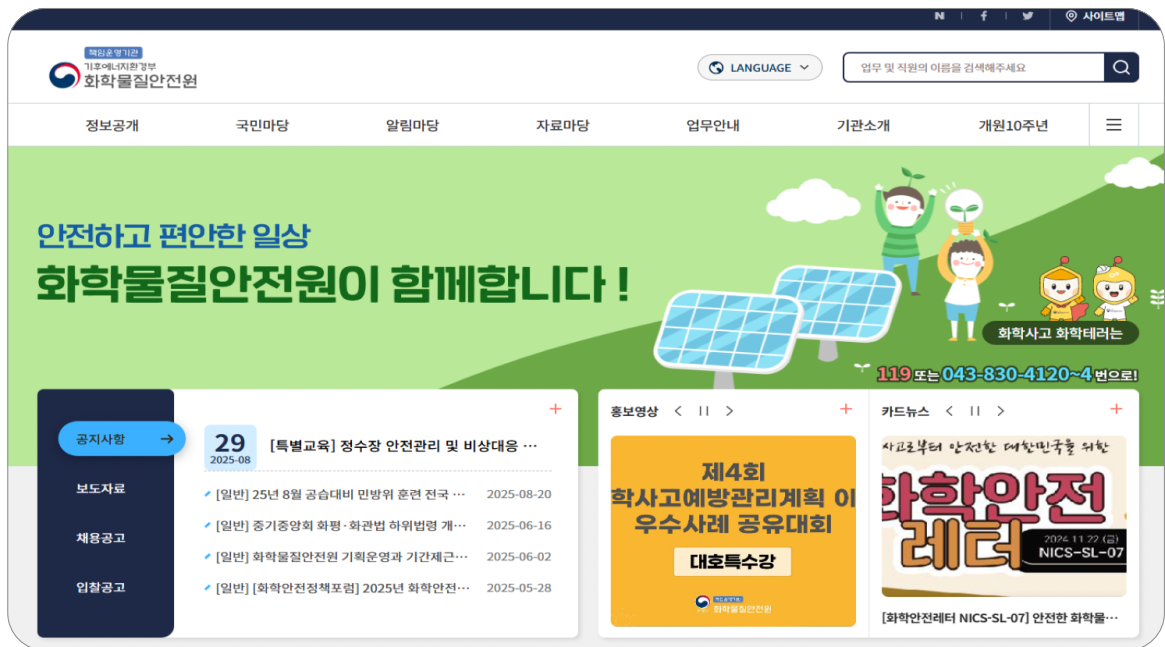
기타

이 외에도 ③ 사용상 주의사항, ④ 물리화학적 특성 정보, ⑤ 유해성 정보 및 위해성 정보, ⑥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⑦ 살생물제품 재승인 단계 고려사항, ⑧ 변경승인 및 신고 사항, ⑨ 기타(신청자 제공 제품라벨,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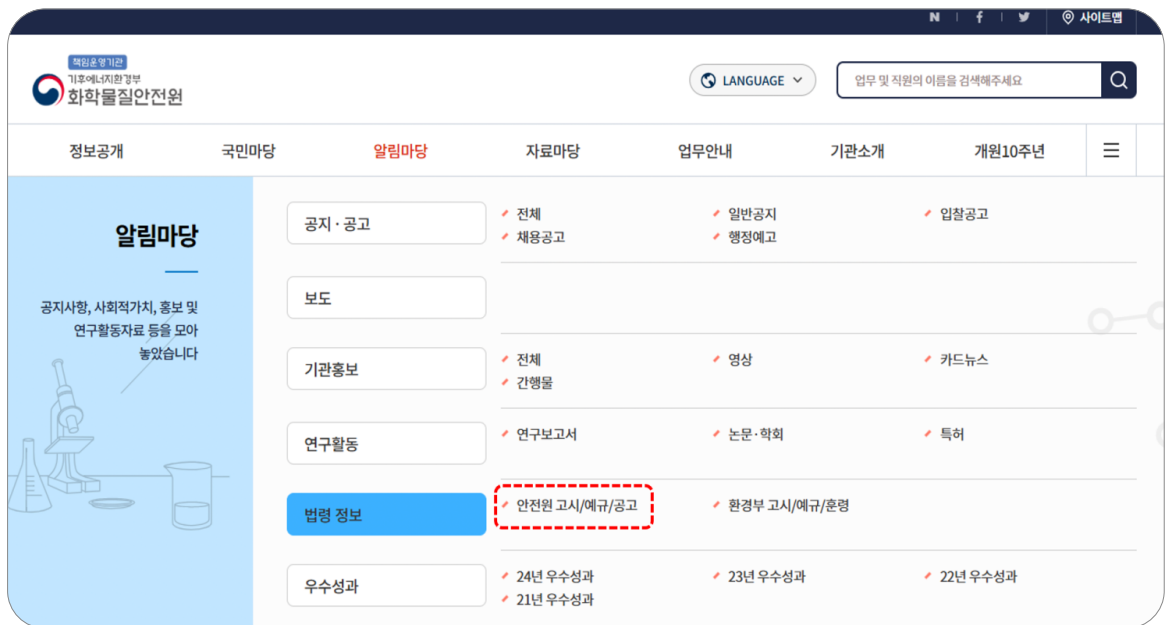
(3)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확인 방법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승인유예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 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해당 물질 목록은 화학물질안전원(<https://nics.mcee.go.kr/main.do>),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https://nics.mcee.go.kr/main.do>)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커서를 올려둔 뒤, [법령 정보]에서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고시 목록이 많으므로, 화면 상단 오른쪽 검색창에서 '승인유예', '기존살생물'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의 최신 개정본을 선택합니다.

해당 게시글에 접속하면 첨부 파일에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시의 [별표]에서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목록과 승인유예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합니다.

승인유예 종료일은 별표에 따라 확정되며,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지사항과 고시 개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림마당

공지 · 공고

보도

기관홍보

연구활동

법령 정보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환경부 고시/예규/훈령

우수성과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날짜 2025-02-03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김민국 부서명 유해성관리과 조회 252

첨부 파일

붙임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전문.hwp(128,915 Byte)

붙임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hwp(55,782 Byte)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5-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2월 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60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승인유예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물질 및 승인유예기간 (‘25.12. 기준)〉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CASNo.)	승인유예기간
1	Bronopol	52-51-7	2027.12.31.
2	Chlorocresol	59-50-7	2027.12.31.
3	Formic acid	64-18-6	2027.12.31.
4	Benzoic acid	65-85-0	2027.12.31.
5	Citric acid	77-92-9	2027.12.31.
6	[1,1'-Biphenyl]-2-ol; o-Phenylphenol	90-43-7	2027.12.31.
7	1-(4-Chlorophenyl)-3-(3,4-dichlorophenyl)urea; Triclocarban	101-20-2	2027.12.31.
8	Performic acid	107-32-4	2027.12.31.
9	Glutaraldehyde	111-30-8	2027.12.31.
10	2-Phenoxyethanol	122-99-6	2027.12.31.
11	Potassium dimethyldithiocarbamate	128-03-0	2027.12.31.
12	Sodium dimethyldithiocarbamate	128-04-1	2027.12.31.
13	N-(Trichloromethylthio)phthalimide; Folpet	133-07-3	2027.12.31.
14	2-Thiazol-4-yl-1H-benzimidazole; Thiabendazole	148-79-8	2027.12.31.
15	Sodium carbonate	497-19-8	2027.12.31.
16	3-(Dodecylamino)propane-1,2-diol	821-91-0	2027.12.31.
17	Calcium dihydroxide	1305-62-0	2027.12.31.
18	Calcium oxide	1305-78-8	2027.12.31.
19	Calcium peroxide	1305-79-9	2027.12.31.
20	Hydroxylapatite	1306-06-5	2027.12.31.
21	Zinc oxide	1314-13-2	2027.12.31.
22	Copper sulphide	1317-40-4	2027.12.31.
23	Zeolite, cuboidal, crystalline, synthetic, non-fibrous	1318-02-1	2027.12.31.
24	Ammonia, aqueous solution	1336-21-6	2027.12.31.
25	2-Methyl-1,2-benzisothiazolin-3-one; MBIT	2527-66-4	2027.12.31.
26	1,2-Benzisothiazol-3(2H)-one; BIT	2634-33-5	2027.12.31.
27	2-Methyl-4-isothiazolin-3-one; MIT	2682-20-4	2027.12.31.
28	Triclosan	3380-34-5	2027.12.31.
29	(Ethylenedioxy)dimethanol	3586-55-8	2027.12.31.
30	Pyridine-2-thiol 1-oxide, sodium salt; Sodium pyrrhione	3811-73-2	2027.12.31.
31	2-n-Butyl-benzo[d]isothiazol-3-one; BBIT	4299-07-4	2027.12.31.
32	2,2',2''-(hexahydro-1,3,5-triazine-1,3,5-triyl)triethanol	1029-71-3	2027.12.31.
33	Dimethyldioctylammonium chloride	5538-94-3	2027.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CASNo.)	승인유예기간
34	N,N'-methylenebis(morpholine; MBM	5625-90-1	2027.12.31.
35	1H,3H,5H-oxazolo[3,4-c]oxazole-7a(7H)-methanol	6542-37-6	2027.12.31.
36	Di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	7173-51-5	2027.12.31.
37	Silver	7440-22-4	2027.12.31.
38	Copper	7440-50-8	2027.12.31.
39	Calcium	7440-70-2	2027.12.31.
40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odium hypochlorite	7681-52-9	2027.12.31.
41	Hydrogen peroxide	7722-84-1	2027.12.31.
42	Zinc sulfate	7733-02-0	2027.12.31.
43	Sodium chlorite	7758-19-2	2027.12.31.
44	Silver nitrate	7761-88-8	2027.12.31.
45	Ammonium sulphate	7783-20-2	2027.12.31.
46	Silver chloride	7783-90-6	2027.12.31.
47	Fats and Glyceridic oils, margosa	8002-65-1	2027.12.31.
48	Lysozyme	9001-63-2	2027.12.31.
49	Chitosan	9012-76-4	2027.12.31.
50	2,2-Dibromo-2-cyanoacetamide; DBNPA	10222-01-2	2027.12.31.
51	Zinc pyrrhione	13463-41-7	2027.12.31.
52	Titanium dioxide	13463-67-7	2027.12.31.
53	Zirconium bis(hydrogen phosphate)	13772-29-7	2027.12.31.
54	Disodium carbonate, compound with hydrogen peroxide (2:3)	15630-89-4	2027.12.31.
55	Halogenated hydantoin	16079-88-2	2027.12.31.
56	D-gluconic acid, compound with N,N''-bis(4-chlorophenyl)-3,12-diimino-2,4,11,13-tetraazatetradecanediamidine (2:1)	18472-51-0	2027.12.31.
57	(E)-3-(p-Toluenesulfonyl)acrylonitrile	19542-67-7	2027.12.31.
58	1-[(Diiodomethyl)sulfonyl]-4-methylbenzene	20018-09-1	2027.12.31.
59	(Benzothiazol-2-ylthio)methyl thiocyanate; TCMTB	21564-17-0	2027.12.31.
60	Zinc ion	23713-49-7	2027.12.31.
61	3-Phenoxybenzyl 2-dimethyl-3-(methylpropenyl)cyclopropanecarboxylate	26002-80-2	2027.12.31.
62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CMIT	26172-55-4	2027.12.31.
63	2-Octyl-3(2H)-isothiazolone; OIT	26530-20-1	2027.12.31.
64	Dimethyloctadecyl[3-(trimethoxysilyl)propyl]ammonium chloride	27668-52-6	2027.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CASNo.)	승인유예기간
65	3-(3,5-dichlorophenyl)-N-isopropyl-2,4-dioximidazolidine-1-carboxamide; Iprodione	36734-19-7	2027.12.31.
66	Dimethyltetradecyl[3-(trimethoxysilyl)propyl]ammonium chloride	41591-87-1	2027.12.31.
67	Permethrin; m-phenoxybenzyl 3-(2,2-dichlorovinyl)-2,2-dimethylcyclopropanecarboxylate	52645-53-1	2027.12.31.
68	2-Anilino-4,6-dimethylpyrimidine, N-(4,6-dimethylpyrimidin-2-yl)aniline; Pyrimethanil	53112-28-0	2027.12.31.
69	3-Iodo-2-propynyl butylcarbamate	55406-53-6	2027.12.31.
70	5-Chloro-2-methyl-3(2H)-isothiazolone, mixt. with 2-methyl-3(2H)-isothiazolone (Mixture of CMIT/MIT)	55965-84-9	2027.12.31.
71	Poly(oxymethylene), a-(1H,3H,5H-oxazolo[3,4-c]oxazol-7a(7H)-ylmethyl)-w-hydroxy-	56709-13-8	2027.12.31.
72	5-Hydroxymethoxymethyl-1-aza-3,7-dioxabicyclo(3.3.0)octane	59720-42-2	2027.12.31.
73	1-[[2-(2,4-Dichlorophenyl)-4-propyl-1,3-dioxolan-2-yl]methyl]-1H-1,2,4-triazole; Propiconazole	60207-90-1	2027.12.31.
74	Dimethyloctadecyl[3-(triethoxysilyl)propyl]ammonium chloride	62117-57-1	2027.12.31.
75	4,5-Dichloro-2-N-octyl-4-isothiazolin-3-one; DCOIT	64359-81-5	2027.12.31.
76	Glass, oxide, chemicals	65997-17-3	2027.12.31.
77	Frits, chemicals	65997-18-4	2027.12.31.
78	Glycerides, C8-18 and C18-unsatd. mono- and di-	67701-31-9	2027.12.31.
79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benzyl-C12-16-alkyldimethyl, chlorides	68424-85-1	2027.12.31.
80	1-Dodecanaminium, N,N-dimethyl-N-[2-[(2-methyl-1-oxo-2-propen-1-yl)oxy]ethyl]-, bromide (1:1), homopolymer	96526-36-2	2027.12.31.
81	1-Decanaminium, N,N-dimethyl-N-[2-[(2-methyl-1-oxo-2-propen-1-yl)oxy]ethyl]-, bromide (1:1), homopolymer	107429-41-4	2027.12.31.
82	1-(4-chlorophenyl)-4,4-dimethyl-3-(1,2,4-triazol-1-ylmethyl)pentan-3-ol; Terbuconazole	107534-96-3	2027.12.31.
83	4-(4-chlorophenyl)-2-phenyl-2-[(1H-1,2,4-triazol-1-yl)methyl]butanenitrile	114369-43-6	2027.12.31.
84	Silver zeolite	130328-18-6	2027.12.31.
85	Silver copper zeolite	130328-19-7	2027.12.31.
86	Silver zinc zeolite	130328-20-0	2027.12.31.
87	Fludioxonil; 4-(2,2-difluoro-1,3-benzodioxol-4-yl)-1H-pyrrole-3-carbonitrile	131341-86-1	2027.12.31.
88	Azoxystrobin; methyl(E)-2-[2-[6-(2-cyanophenoxy)pyrimidin-4-yloxy]phenyl]-3-methoxyacrylate	131860-33-8	2027.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CASNo.)	승인유예기간
89	N,N-Dimethyl-N-[3-(trihydroxysilyl)propyl]-1-octadecanaminium, chloride (1:1)	199111-50-7	2027.12.31.
90	N-Didecyl-N-dipolyethoxyammonium borate/ Didecylpolyoxethylammonium borate; Polymeric betaine	214710-34-6	2027.12.31.
91	Paeonia Suffruticosa Root Extract	223747-88-4	2027.12.31.
92	Phosphoric acid, silver(1+) sodium zirconium(4+) salt	265647-11-8	2027.12.31.
93	Silver phosphate glass	308069-39-8	2027.12.31.
94	Oil of lemon eucalyptus	1245629-80-4	2027.12.31.
95	1-Dodecanaminium, N,N-dimethyl-N-[2-[(2-methyl-1-oxo-2-propen-1-yl)oxy]ethyl]-, bromide (1:1), polymer with methyl 2-methyl-2-propenoate	1590389-44-8	2027.12.31.
96	r-Mussel Polypeptide r-Mussel Oligopeptide sh-Polypeptide	2651946-42-6	2027.12.31.
97	1-Dodecanaminium, N,N-dimethyl-N-[2-[(2-methyl-1-oxo-2-propen-1-yl)oxy]ethyl]-, bromide (1:1), polymer with 2-propenoic acid, sodium salt	2803111-74-0	2027.12.31.
98	1-Dodecanaminium, N,N-dimethyl-N-[2-[(2-methyl-1-oxo-2-propen-1-yl)oxy]ethyl]-, tetrafluoroborate(1-) (1:1), polymer with ethenylbenzene	2803111-76-2	2027.12.31.
99	1-Decanaminium, N,N-dimethyl-N-[2-[(2-methyl-1-oxo-2-propen-1-yl)oxy]ethyl]-, 2-hydroxybenzoate (1:1), homopolymer	2803111-78-4	2027.12.31.
100	1-Dodecanaminium, N,N-dimethyl-N-[2-[(2-methyl-1-oxo-2-propen-1-yl)oxy]ethyl]-, 2-hydroxybenzoate (1:1), homopolymer	2803111-79-5	2027.12.31.
101	Starch, polymer with N,N-dimethyl-N-[2-[(2-methyl-1-oxo-2-propen-1-yl)oxy]ethyl]-1-decanaminium bromide (1:1)	2803355-19-1	2027.12.31.
102	1-Decanaminium, N,N-dimethyl-N-[2-[(2-methyl-1-oxo-2-propen-1-yl)oxy]ethyl]-, bromide (1:1), polymer with 1,1'-[2-ethyl-2-[[[(1-oxo-2-propen-1-yl)oxy)methyl]-1,3-propanediyl]di-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2803355-20-4	2027.12.31.
103	1-Dodecanaminium, N,N-dimethyl-N-[2-[(2-methyl-1-oxo-2-propen-1-yl)oxy]ethyl]-, bromide (1:1), polymer with 1,1'-[2-ethyl-2-[[[(1-oxo-2-propen-1-yl)oxy)methyl]-1,3-propanediyl]di-2-propenoate and methyl 2-methyl-2-propenoate	2803355-21-5	2027.12.31.
104	1-Dodecanaminium, N,N-dimethyl-N-[2-[(2-methyl-1-oxo-2-propen-1-yl)oxy]ethyl]-, 2-hydroxy-1,2,3-propanetricarboxylate (1:1), polymer with methyl 2-methyl-2-propenoate	2803355-23-7	2027.12.31.
105	Zinc silicate Glass	고유번호 없음	2027.12.31.
106	Monochloramine generated from ammonium sulphate and a chlorine source	고유번호 없음	2029.12.31.
107	Monochloramine generated from sodium hypochlorite and an ammonium source	고유번호 없음	2029.12.31.

(4)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질 정보 확인 방법

또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은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목록에 포함된 물질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질 지정 고시’에 명시된 범위 및 조건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총 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제목 위해성이 낮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공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정민선	2025-09-26	575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1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질	김명희	2024-05-02	78

이번에는 상단 검색창에 ‘위해성이 낮은’을 입력하여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질의 지정」 고시를 조회합니다.

안전원 고시/예규/공고

날짜 2024-05-0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1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질

작성자 김명희 | 부서명 기획운영과 | 조회 79

첨부 파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1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질.zip (46,429 Byte)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1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질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으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25.12. 기준)〉

연번	살생물물질명	CAS 번호
1	젖산(Lactic acid, $C_3H_6O_3$)	50-21-5
2	아세트산 나트륨(Sodium acetate, $C_2H_3NaO_2$)	127-09-3
3	벤조산 나트륨(Sodium benzoate, $C_7H_5NaO_2$)	532-32-1
4	(+)타르타르산((+)Tartaric acid, $C_4H_6O_6$)	87-69-4
5	아세트산(Acetic acid, $C_2H_4O_2$)	64-19-7
6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C_3H_6O_2$)	79-09-4
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_6H_8O_6$)	50-81-7
8	린시드 오일 또는 아마씨유(Linseed oil)	8001-26-1
9	라벤더 오일(Lavender oil)	8000-28-0
10	페퍼민트 오일(Peppermint oil)	8006-90-4
11	1-옥텐-3-올(1-Octen-3-ol 또는 Oct-1-en-3-ol, $C_8H_{16}O$)	3391-86-4
12	옷좀나방 페로몬(Webbing clothes moths pheromone)	
13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_2)	124-38-9
14	질소(Nitrogen, N_2)	7727-37-9
15	(Z,E)-테트라데카-9,12-다이엔일 아세테이트 ((Z,E)-Tetradeca-9,12-dienyl acetate, $C_{16}H_{28}O_2$)	30507-70-1 31654-77-0
16	바큘로바이러스(Baculovirus)	
17	벤토나이트(Bentonite)	1302-78-9
18	시트로넬랄(Citronellal, $C_{10}H_{18}O$)	106-23-0
19	황산 철(II)(Iron(II) sulphate)	7720-78-7 7782-63-0 13463-43-9
20	글리세롤(Glycerol)	56-81-5
21	탄산수소 나트륨(Sodium hydrogen carbonate)	144-55-8
22	탄산 칼슘(Calcium carbonate)	471-34-1
23	염화 나트륨(Sodium chloride)	7647-14-5

Part

3

섬유제품 유형별 이행 사항

- 1 섬유제품 항균처리 개요
- 2 원사·원단 제조·수입업자 이행 사항
- 3 섬유 완제품 제조·수입업자 이행 사항
- 4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충제 등)의 제조·수입업자 이행 사항
- 5 공급망내 살생물제 정보 전달 방법
- 6 통신판매업자·중개업자 이행 사항
- 7 규제 불이행 시 행정 조치

섬유제품 향균처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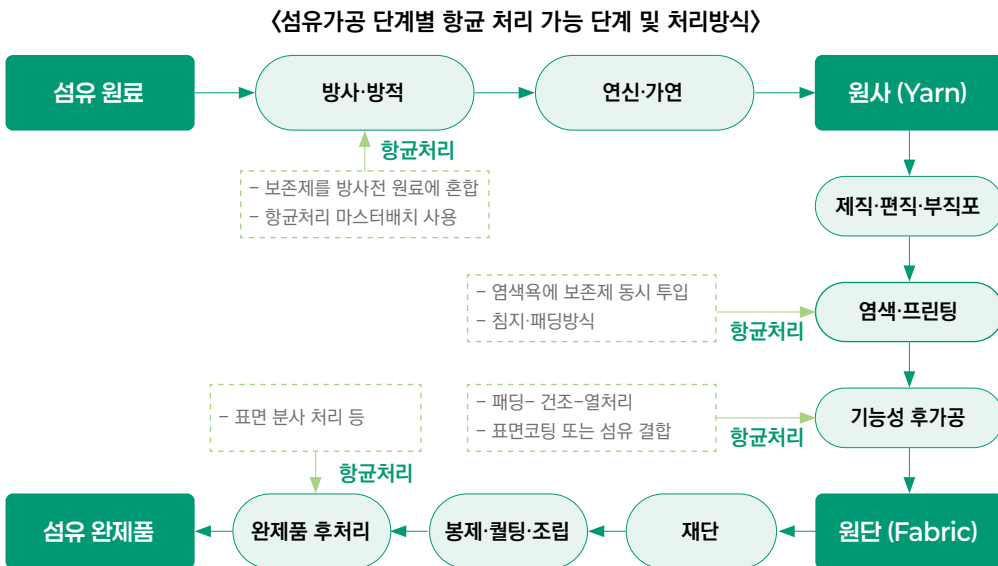
섬유제품의 살생물 처리(항균 또는 보존 등)는 섬유 원사 제조 단계부터 완제품 제작 및 후처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섬유 원사 제조 단계에서는 방사 공정 중에 살생물제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무기계 항균제가 폴리머 칩이나 수지에 혼합되어, 섬유 내부에 항균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단계인 원단 제조 단계에서는 섬유를 직조하거나 편직한 후, 가공 또는 염색 공정 중에 살생물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살생물 처리는 주로 유기화합물 기반 항균 가공제를 이용하며, 섬유 표면에 살생물제를 코팅하거나 흡착시키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후 완제품 제조 단계에서는 재단, 봉제, 후처리 등 과정에서 원단에 이미 부여된 살생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후처리 과정에서 살생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 단계를 고려하여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살생물제의 종류와 처리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정보의 연계와 적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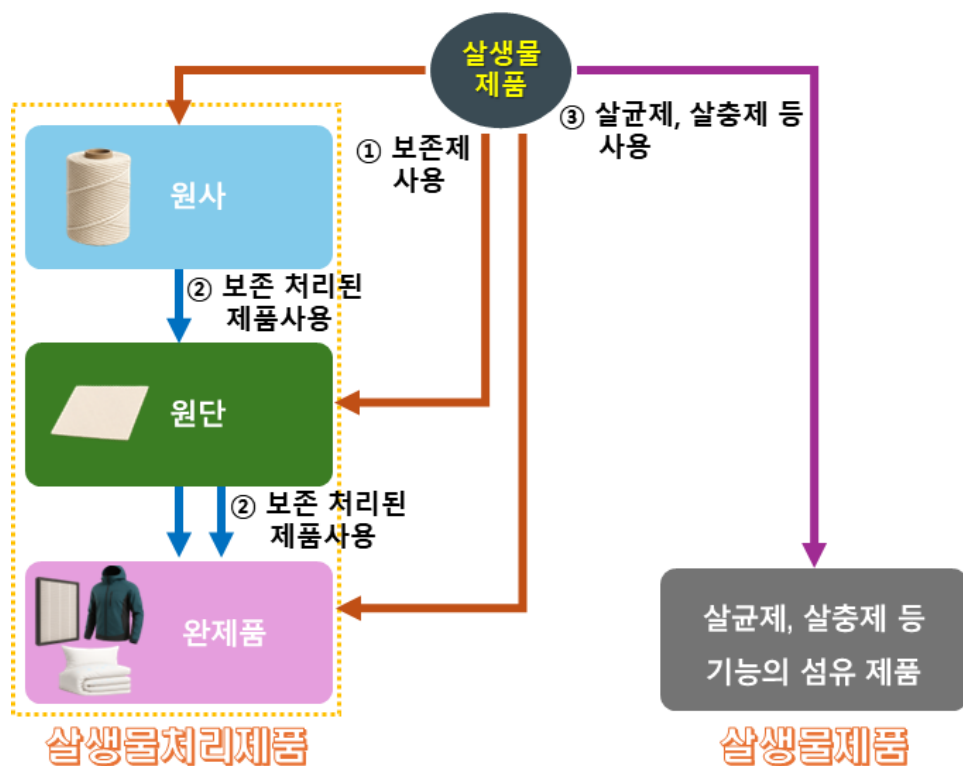
※ 섬유가공시 항균처리는 대부분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유형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사용하나, 완제품 표면에 코팅된 막을 보호하는 목적인 경우(일부 완제품 후처리용 등)에는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유형의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 함

〈섬유가공 단계 정의 및 특징〉

단계	정의	특징
방사 (Spinning, Filament spinning)	고분자 원료(용융 또는 용액 상태)를 노즐을 통해 뽑아 연속된 실(필라멘트) 형태로 만드는 공정	용융방사, 습식방사, 건식방사 등 방식
방적 (Yarn spinning)	짧은 섬유(스테이플 파이버)를 정렬·꼬임하여 일정한 굵기와 강도를 가진 실(원사)로 만드는 공정	꼬임 정도가 강도·촉감에 영향
연신 (Drawing)	방사 또는 방적된 실을 잡아당겨 분자배열을 정렬시켜 강도와 탄성을 향상시키는 공정	강도·신율 조절 목적
가연 (Twisting)	원사에 꼬임을 추가하여 내구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이는 공정	제직·편직 적합성 향상
제직 (Weaving)	경사와 위사를 직각으로 교차시켜 직물(짜여진 천)을 만드는 공정	셔츠, 시트, 커튼 등에 사용
편직 (Knitting)	원사를 고리(loop) 형태로 연결해 신축성이 있는 원단을 만드는 공정	의류, 침구 커버 등에 사용
부직포 제조 (Nonwoven processing)	원사를 만들지 않고 섬유를 물리적·화학적·열적 방법으로 결합해 원단을 만드는 공정	필터, 충전재, 위생용 소재 등에 사용
염색 (Dyeing)	섬유 또는 원단에 색상을 침투·고정시키는 공정	기능성 물질과 동시 처리 가능
프린팅 (Printing)	원단 표면에 무늬·문양을 국부적으로 인쇄하는 공정	염색과 달리 표면 중심 처리
후가공 (Finishing)	원단의 기능·촉감·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학적·물리적 처리를 하는 공정	항균, 발수, 방오, 소프트 가공 등
재단 (Cutting)	완성된 원단을 패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	원단 → 제품 전환 시작점
봉제 (Sewing)	재단된 원단을 봉합·조립하여 의류·침구 등의 형태를 완성하는 공정	제품 품질·내구성에 직접 영향

이와 같이 섬유 가공단계에서 보존제를 사용하는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섬유제품의 살생물제 처리 단계〉



원사·원단 제조·수입업자 이행 사항

단계	할 일	세부 내용
1	살생물제 사용여부 확인	- 생산 공정(방사, 가공, 염색 등)에서 살생물제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 기능성 가공(보존·항균 처리 등)시, 살생물처리 목적 명확화 - 공급받은 원료·첨가제의 성분 및 용도 등 확인서 확보
2	살생물물질·제품의 적법성 확인 (승인/유예/면제)	- 사용하려는 살생물물질·제품이 승인 또는 유예대상인지 검토 - 승인번호, CAS번호, 물질명 등 근거자료 확보 - 해외 공급처로부터 살생물제를 공급받았을 경우, 사용된 살생물제의 성분과 CAS 번호, 국내 승인 여부 확인
3	살생물제 사용기록 관리 (직접 처리시)	- 제조공정별(예: 방사·염색·후가공 등) 살생물제 사용 시점·투입량·처리목적 기록 - 동일 제품군 내 사용 패턴 및 배합비 변경 시 이력관리 - 시험 성적서 보관
4	공급망 정보제공 체계 구축	- 공급망(의류·완제품 제조사 등)에 제공할 살생물제 관련 정보 정리 - 물질명, 승인번호, 처리목적, 사용범위 등 '살생물제 정보 확인서' 양식화 권장 - 신규 납품처 발생 시 제품별 물질정보 자동연계 시스템 구축 권장
5	올바른 광고·주장 의무	-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제품의 기능 표시·광고 - 효과·효능 광고 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 적용,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문구 사용
6	관리기록	-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에 따라 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여 섬유제품 제조시 규제 이행 입증 근거 확보 - 사용된 살생물물질·제품의 종류, 함량, 처리목적 등을 제품별로 기록 - 공급망(완제품 제조사 등) 요청 시 즉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리

원사·원단 제조 및 수입 단계는 섬유 제품의 안전성과 적절한 살생물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원사·원단 제조사는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제품의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1. 살생물제 사용 여부 확인

원사·원단 제조 및 수입사는 제품의 생산 공정 중 **살생물제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방사, 제직, 편직, 염색, 후가공 등 주요 공정에서 기능성 부여를 위해 살생물제가 투입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각 공정별 사용 여부와, 사용된 살생물제가 어떤 목적(보존·항균 처리 등)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받는 원료나 첨가제의 성분, 사용 목적, 용도 등을 제조사 또는 수입처로부터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살생물제 사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이후의 적법성 검증 및 승인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공급단계에서의 최초 확인 절차가 핵심 관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2.2. 살생물물질·제품의 적법성 확인(승인/유예/면제)

살생물제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된 원사, 원단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규 살생물물질은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국내 제조·수입사는 사용 중인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인지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는지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된 성분의 물질명, CAS 번호 등의 정보를 확보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를 통해 승인 여부 및 승인 범위(제품유형, 사용농도, 용도 등)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섬유제품에 처리되는 보존제는 대부분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유형으로 승인받은 제품이 해당하며, 제품 표면에 코팅된 막을 보호하는 목적인 경우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유형으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승인받은 제품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제초연제

잔자린원

알림마당

승인 살생물질 정보공개

HOME

살생물질

살생물질관리

승인 살생물질 정보공개

계통유형

전체

검색어

=전체=

Q 조회

총계시물 72건 (1/8)

10건의 보기

순번	정보공개번호	규약번호(CAS No.)	살생물질명 명칭	사용가능 살생물제용 유형 및 기능	살생물질용도	통출승인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승인정보
1	2022-01	51-05-6	Pieronyl Butoxide	살균제 (PT-05) · 살충제	전문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 산업시설(실내), 주거시설(실내) 및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 주거시설(실내)	10년(2032.12.29 까지)	상세보기
2	2022-02	59-50-7	Chlorores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살진균제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	10년(2032.12.29 까지)	상세보기
3	2022-03	64-17-5	Ethan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살진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 다중이용시설(실내) 및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 주거시설(실내)	10년(2032.12.29 까지)	상세보기
4	2022-04	67-63-0	Isopropyl alcoh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살진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 및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 주거시설(실내)	10년(2032.12.29 까지)	상세보기
5	2022-05	71-23-8	Propan-1-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 주거시설(실내)	10년(2032.12.29 까지)	상세보기
6	2022-06	77-32-9	Citric acid	살균제 (PT-01) · 살균제	전문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 및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 주거시설(실내)	10년(2032.12.29 까지)	상세보기
7	2022-07	79-21-0	Peracetic acid	살균제 (PT-01) · 살균제, 살진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 및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 주거시설(실내)	10년(2032.12.29 까지)	상세보기
8	2022-08-1	87-90-1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ymcose	살균제 (PT-01) · 살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 및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 주거시설(실내)	10년(2032.12.29 까지)	상세보기
9	2022-08-2	87-90-1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ymcose	살조제 (PT-02) · 살조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실내) 및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실내)	10년(2032.12.29 까지)	상세보기
10	2022-09	89-83-8	Thymol; 2-isopropyl-5-methylphen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일반사용자·주거시설(실내)	10년(2032.12.29 까지)	상세보기

1 2 3 4 5 6 7 8

해외 공급사로부터 살생물물질·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살생물제의 성분, CAS 번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승인 또는 유예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목록에 등재된 경우라도, 살생물제품 승인유효기간이내에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적법성 확인 과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한 경우 대체물질 선정 또는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3. 살생물제 사용기록 관리(직접 보존 처리시)

살생물제를 직접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공정별 사용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 단계별(방사, 염색, 후가공 등) 사용시점, 투입량, 희석비율, 처리목적 등 기록
- 동일 제품군 내 배합비 변경, 사용량 조정, 사용 패턴 또는 공정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 살생물물질·제품 또는 처리된 소재에 대해 실시한 시험성적서의 보관

제품별 관리대장, 공정별 사용기록서 등으로 전자 기록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완제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로 납품될 때 제공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공급처로부터 살생물물질·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공급처가 제공한 성분자료, 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함께 보관하여 향후 적법성 검토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4. 공급망 정보제공 체계 구축

원사·원단 제조·수입사는 자신이 사용한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를 하위 공급망(의류 완제품 제조사, 유통사 등)에 제공해야 합니다.

비록 법령에서 원사·원단 단계의 업체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섬유 완제품의 제조·수입사는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명, 포함된 살생물물질명 및 기능 등을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수입사가 법정 표시사항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사·원단 단계에서 사용된 살생물제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공급망 전체의 적법성 확보와 표시기준 준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업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공급망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물질명, 승인번호, 처리 목적, 사용 범위, 제품 유형 등을 포함한 「살생물제 정보제공서」(또는 확인서) 자체 양식 마련 및 운영
- 신규 제품·신규 납품처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즉시 갱신하고 승인 범위를 재검토하는 내부 절차 구축
- 제품별 물질정보가 자동 연계·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도입 검토

이와 같은 체계는 공급망 전체의 적법성 확보, 표시기준 준수, 규제 점검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2.5. 올바른 광고·주장 의무

원사·원단 단계에서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더라도, 이 단계에서 작성·제공하는 제품 설명서, 카탈로그, B2B 홍보자료 등의 내용은 완제품 단계의 표시·광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원사·원단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정보 기반의 제품 기능 표시·광고
- 기능성 표현(보존·항균 처리 등)을 사용할 경우, 국내에서 승인된 범위 내의 문구로만 안내 필요
- ‘유해세균 제거’, ‘바이러스 차단’ 등과 같은 표현은 살생물제품의 주기능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승인 제품이 아닌 경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고객사에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

이러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문구 관리 의무는 원사·원단 공급업체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완제품 제조·수입사가 법적 문제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2.6. 관리 기록

마지막으로, 원사·원단 제조·수입업자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에 따라 살생물제 사용 및 처리 이력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종류, 사용량, 처리 목적 등을 기록·보관
- 관련 시험성적서, 승인번호 확인자료, 공급망 정보제공서 등을 함께 보관
- 완제품 제조사·유통사 등에서 물질 정보 요청 또는 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

섬유제품 제조사는 「화학제품안전법」이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것을 언제든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섬유제품 제조사가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시와 광고를 이행하였으나 다른 판매자가 섬유제품 제조사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잘못된 광고를 사용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리기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섬유 완제품 제조·수입업자 이행 사항

섬유 완제품 제조·수입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최종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사·원단 및 부자재 공급망 단계에서부터 확보된 살생물제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의 표시·광고·판매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1 섬유완제품 제조업자

단계	할 일	세부 내용
1	살생물제 사용여부 확인	- 보존·항균처리 등 기능성 가공 표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살생물제 사용 여부를 검토하되, 제품의 표시·광고 여부와 관계없이 섬유 완제품 제조·수입자는 경과조치 기간 내 사용이 허용되거나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제품만을 사용 - 제품의 구성 소재(원사·원단·부자재 등)에 살생물물질·제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공급사로부터 확인 -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정보(명칭 및 CAS 번호, 승인번호 등) 확보 - 해당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범위(용도·농도 등) 확인
2	살생물물질·제품의 적법성 확인 (승인/유예/면제)	- 사용하려는 살생물물질·제품이 승인 또는 유예대상인지 검토 - 승인번호, CAS번호, 물질명 등 근거자료 확보 - 해외 공급처로부터 살생물제를 공급받았을 경우, 사용된 살생물제의 성분과 CAS 번호, 국내 승인 여부 확인
3	살생물제 사용기록 관리 (직접 처리시)	- 제조공정별(예: 방사·염색·후가공 등) 살생물제 사용 시점·투입량·처리목적 기록 - 동일 제품군 내 사용 패턴 및 배합비 변경 시 이력관리 - 시험 성적서 보관

4	올바른 광고·주장 의무	-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제품의 기능 표시·광고 - 효과·효능 광고 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 적용,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문구 사용
5	내부 관리체계 확립	- 원자재·부자재별 살생물제 사용현황 및 물질 목록 관리 - 살생물제 관련 자료(MSDS, 승인서, 시험성적서 등)와 제품별 관리대장 연계
6	기록 보존 및 사후 관리	-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물질 정보는 요청 시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여 섬유제품 제작상의 이행 입증 필요 -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빠른 시정조치 필요

3.1.1. 살생물제 사용여부 확인

완제품 제조·수입사는 제품의 표시·기능성 가공 문구(보존·항균 처리 등)가 단순한 마케팅 표현인지, 실제 살생물제를 투입한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살생물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표시·광고 여부와 관계없이 경과조치 기간 내 사용이 허용되거나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성장 억제 등 살생물 작용에 기인한 공정일 가능성이 있어, 살생물제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존·항균 처리’, ‘방취’ 등 미생물의 성장 억제를 통해 효과를 발현하는 기능성 가공 문구가 표시된 원사·원단·부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 ‘소취’, ‘탈취’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경우, 그 효과가 미생물의 성장 억제에 따른 것인지, 또는 물리적 흡착 등 다른 방식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필터, 침구류, 내의류, 스포츠웨어 등 위생 또는 쾌적성 등의 기능을 강조하는 제품군에 해당하는 경우

용어	정의
방취 (Antideodorant)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땀이나 부패로 인한 냄새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
소취 (Deodorization)	공기 중의 악취 성분을 분해하거나 흡착하여 냄새를 제거하는 것
탈취 (Deodorizing)	냄새의 원인을 제거(분해 또는 흡착 등)하는 방식(예:활성탄)과, 다른 향으로 냄새를 덮어 가리는 마스킹 방식(예:방향제) 모두를 포함한 것

이를 위해 완제품 제조·수입사는 공급사(원사·원단·부자재 업체)로부터 살생물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살생물물질·제품이 사용된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문서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
- 사용된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번호
- 처리 목적(보존, 항균 등) 및 적용 부위

또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살생물물질 또는 제품이 어떤 제품유형, 용도, 농도 범위에서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완제품에서의 사용 조건이 승인 범위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승인 범위를 벗어난 용도나 농도는 완제품 전체를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1.2. 살생물물질·제품의 적법성 확인(승인/유예/면제)

살생물제를 직접 처리하거나 살생물제 사용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물질·제품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명칭, CAS 번호, 승인번호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국내 승인물질인지, 승인유예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고시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살생물제품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제품 승인을 받았는지, 또는 승인유예기간 내에 있는 제품인지 여부
- 제품이 승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등

이를 위해서는 물질명, CAS 번호, 제조·수입사, 승인번호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를 통해 국내 승인·승인유예 적용 여부 및 승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섬유제품에 처리되는 보존제는 대부분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유형으로 승인받은 제품이 해당하며, 제품 표면에 코팅된 막을 보호하는 목적인 경우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유형으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승인받은 제품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US EPA, EU BPR 등으로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내 법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갖지 않으며, 국내에서 제조·수입·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급처 변경, 성분 구성 조정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범위와의 일치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1.3. 살생물제 사용기록 관리(직접 보존 처리시)

살생물제를 직접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공정별 사용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 단계별 사용시점, 투입량, 희석비율, 처리목적 등 기록
- 동일 제품군 내 배합비 변경, 사용량 조정, 사용 패턴 또는 공정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 살생물물질 또는 처리된 소재에 대해 실시한 시험성적서의 보관

제품별 관리대장, 공정별 사용기록서 등으로 전자 기록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완제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로 납품될 때 제공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공급처로부터 살생물물질·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공급처가 제공한 성분자료, 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함께 보관하여 향후 적법성 검토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1.4. 올바른 광고·주장 의무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분류되는 의류·침구류 등 섬유 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살생물제 효과·효능이 표시·광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의 본래 기능이 주기능이며, 살생물 효과·효능은 부수적인 기능에 해당하므로 이를 살생물처리제품의 주요 효과·효능처럼 표현하는 광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에 활용되는 모든 문구는 앞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즉, 공급사로부터 확보한 물질명, 승인번호, 처리 목적, 사용 범위 등의 정보가 광고 문구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며, 확보된 정보와 승인 조건을 벗어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99.9% 항균’, ‘세균 제거’, ‘바이러스 사멸’ 등 구체적인 제거율·효능을 강조하는 문구
- 특정 병원성 미생물(예: ○○균, ○○바이러스)을 명시하여 제거·억제 효과를 주장하는 문구
- 대중의 건강보호, 질병 예방 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문구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 해당 제품은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표시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섬유 완제품 제조·수입사는 제품의 특성 및 처리 목적을 고려하여, 기능성 문구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 등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의 범위 내에서 기능을 설명해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효능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표시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1) 해당 제품에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2) 처리에 사용된 살생물물질 정보(명칭·기능)
- 3) 의도적으로 사용된 나노물질 포함 여부
- 4)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주의사항

아울러 제품 라벨, 포장, 온라인 상세페이지 등 모든 판매 채널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살생물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1.5. 내부 관리 체계 확립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는 단발적 확인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제품 라벨과 광고 문구에서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을 시 곧바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살생물제 교체나 공급처 변경이 있을 경우, 법적 승인범위에 부합하는지 즉시 검토해야 하므로 내부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섬유 완제품 제조·수입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사·원단·부자재별 살생물제 사용 현황 목록화
 -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명칭, CAS 번호, 승인번호, 처리 목적, 적용 부위 등 정리
- SDS, 시험성적서, 승인서, 국내 승인 정보, 승인유예 대상 여부 등은 전산화하여 제품관리 시스템 또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 공급처 변경, 신규 원사·원단 및 부자재 도입, 공정 변경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변경사항이 승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신속하게 검토 가능
- 해외 공급사로부터 성분 정보 제공이 지연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해당 원사·원단·부자재를 법적 리스크가 있는 항목으로 관리하여 사용을 보류하거나 대체재 검토 절차를 운영

이와 더불어 내부 부서 간의 정보 공유 체계 역시 중요합니다. 표시·광고 변경, 제품 변경, 신규 소재 적용 시점 등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 체계를 마련하여 승인된 범위에서 벗어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내부 관리 체계는 살생물제가 포함된 원자재·부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이를 완제품 단계까지 적법하게 활용하기 위한 상시 검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공급망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시위반, 성분 누락, 부적합 소재 사용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의 자료 요청이나 행정기관의 점검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1.6. 기록 보존 및 사후 관리

살생물처리제품과 관련된 자료 보존은 단순한 내부 관리 차원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 제공 및 적합성 입증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에 따라, 판매자·유통사 등이 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및 물질 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사는 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정보청구결과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요청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실 및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이때 거부 사유는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함

또한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명칭, 사용 목적, 사용량 등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제조·수입사가 해당 제품을 법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살생물제 관련 정보는 전자문서 형태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여, 점검, 유통사 요청, 소비자 문의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 제품 표시·광고 수정
- 상세페이지 정정
- 출고 중단
- 공급업체 개선 요청 등

제시된 사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규제 위반 및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3.2 섬유완제품 수입업자

단계	할 일	세부 내용
1	살생물물질·제품의 적법성 확인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이 EU BPR, US FIFRA 등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등록되었는지 여부 -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이 다음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유형에 적합하게 승인 받은 살생물물질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등록이 된 살생물물질로서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살생물물질 - “3-1. 섬유 완제품 제조자”의 살생물물질·제품 적법성 확인 내용을 수행한 경우 위의 내용은 미해당
2	올바른 광고·주장 의무	-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제품의 기능 표시·광고 - 효과·효능 광고 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 적용,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문구 사용
3	내부 관리체계 확립	- 원자재·부자재별 살생물제 사용현황 및 물질 목록 관리 - 살생물제 관련 자료(MSDS, 승인서, 시험성적서 등)와 제품별 관리대장 연계
4	기록 보존 및 사후 관리	-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여 섬유제품 제작상의 이행 입증 필요 -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빠른 시정조치 필요

3.2.1. 살생물물질·제품의 적법성 확인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적합한 처리제품으로 인정됩니다.

- 승인된 살생물물질
 -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다고 고시한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정부 승인 살생물물질
 - EU BPR, US FIFRA 등 외국정부의 승인 및 등록을 통해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살생물물질도 일정 조건 하에서 처리제품에 사용 가능
-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또는 법 부칙(「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1항)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 중 제조·수입·사용 등이 허용된 살생물제품,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등록되어있는 살생물제품

※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종류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종류가 해당될 수 있음

- 외국 정부의 승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은 서류 및 해당 물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정부의 승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된 서류 및 해당 제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앞 단계(“3-1. 섬유 완제품 제조자 이행사항”)에서 제시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앞 단계에서 확보한 정보와 검토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며, 추가적인 확인은 공급처 변경, 성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만 실시하면 됩니다.

3.2.2. 올바른 광고·주장 의무

수입업자는 해외 제조사가 제공한 카탈로그·라벨·온라인 설명 문구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 표시·광고 기준과의 정합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한 제품의 기능 표시·광고
 - 기능성 문구는 살생물처리제품의 부수적 목적(제품의 보존·위생 유지 등) 범위에서 사용
-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능·효과 설명
 - 다음과 같은 표현은 살생물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금지
 - ▶ 99.9% 세균 제거, ‘바이러스 차단/사멸’, ‘질병 예방’, ‘감염 예방’ 등 구체적인 수치·질병 관련 표현
 - ▶ 특정 병원성 미생물 명칭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제거·억제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

따라서 수입업자는 해외 제조사가 사용한 광고 문구를 그대로 번역·사용하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국내 승인 범위(처리 목적, 사용 용도, 제품유형 등)와 일치하는지 여부
- 공급망으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에 어떤 기능 표현이 가능한지를 사전 검토 필요

제품 라벨, 포장, 온라인 상세페이지, 홍보 리플릿 등 모든 유통 채널에서 사용되는 문구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사전 검토를 수행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2.3. 내부 관리체계 확립

수입 단계에서는 해외 처리 이력과 국내 유통 제품 간 연결고리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체계를 권장합니다.

- 제품별로 다음 사항을 목록화하여 관리
 - 사용된 살생물제품명, 해외 승인번호(EU BPR, US FIFRA 등)
 - 각 단계별로 사용된 살생물제의 종류와 함량, 처리 목적 등
- MSDS, 시험성적서,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품별 관리대장과 연계하여 보관하는 절차 마련
- 해외 제조사 변경, 배합비 변경, 처리 공정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살생물물질·제품의 적합성 및 승인범위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운영

이러한 자료는 제품 성능 주장 근거, 품목별 표시 검토, 고객사의 정보 요청 대응, 규제 점검 시 적합성 입증 등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므로, 최신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2.4. 기록 보존 및 사후 관리

항균 처리 제품의 수입사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기록 및 보고)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내부 자료가 아니라, 향후 제품 제작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되므로, 제품별로 해당 정보가 빠짐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 살생물제의 명칭·제품명 및 수량
-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아울러 표시·광고 검토, 성분 확인, 공급망 점검 등의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3 항균처리된 필터제품의 제조·수입업자 이행 사항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장치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는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 제10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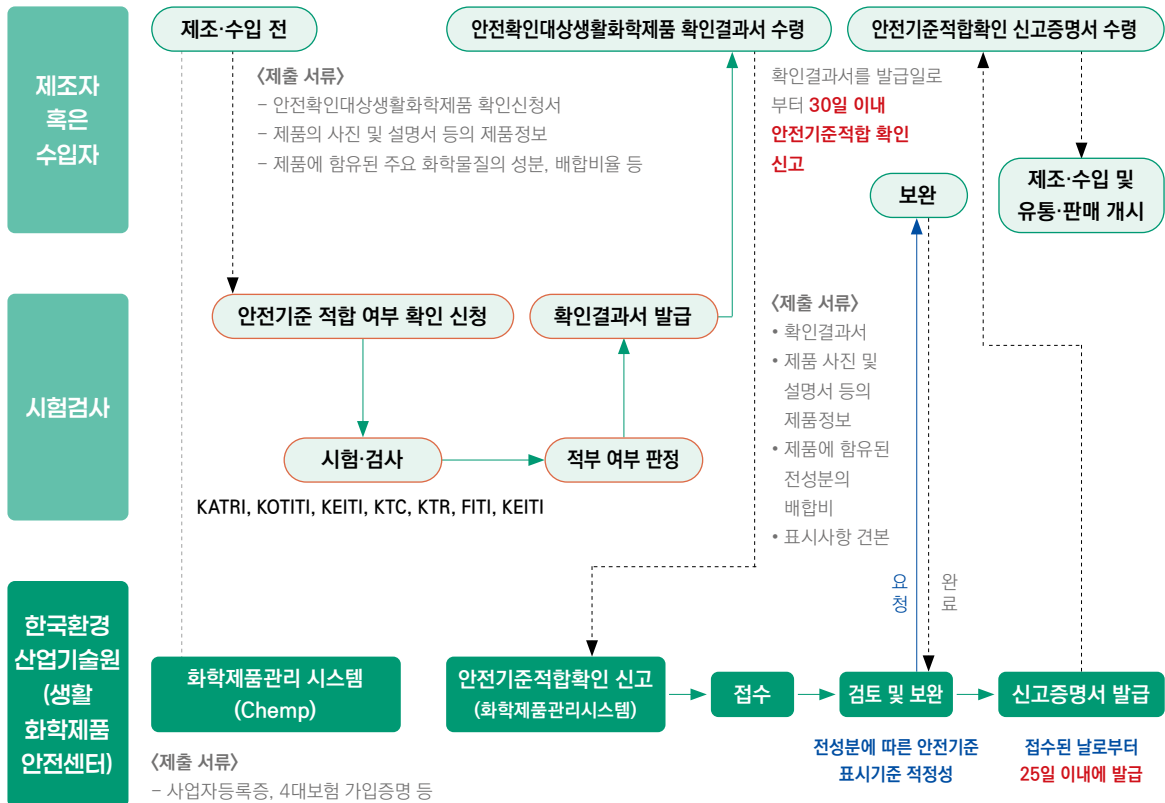
〈섬유가공 단계별 항균 처리 가능 단계 및 처리방식〉

분류	품목	신고/승인	살생물제품· 처리제품 구분
세정제품	• 세정제 • 제거제	신고	보존제 사용시 살생물처리제품
세탁제품	•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신고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 녹 방지제 • 다림질보조제 • 경화제 • 특수목적코팅제 • 윤활제 • 마감제	신고	

분류	품목	신고/승인	살생물제품·처리제품 구분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접합제 • 경화촉진제	신고	보존제 사용시 살생물처리제품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탈취제	신고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신고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신고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신고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신고	
여가용품 관리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신고	
살균제품	• 살균제 • 살조제	신고	살생물제품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승인	
구제제품	• 기피제	신고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승인	
	• 목재용 보존제	신고	
보존· 보존처리제품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신고	살생물처리제품
기타	• 초 • 인공 눈 스프레이 • 습기제거제 • 공연용 포그액	신고	보존제 사용시 살생물처리제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승인	

3.3.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절차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될 시, 안전확인 및 신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3.2.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제품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결과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검사기관은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 시험·검사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KOTITI시험연구원
- FITI시험연구원

해당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기위하여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

- 동일한 완제품 4개(최소 용기까지는 완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 시 제출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신청서 및 어린이보호포장 성적서 각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 마크 사본
- 위탁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OEM, ODM일 경우)
- 신고증명서 사본(갱신의 경우)
- 기존 확인결과서 사본(갱신의 경우)

3.3.3. 안전기준 적합 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을 통해서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업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요 신고 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혼합물 등 CAS No. 없는 물질의 MSDS
- 안전기준 적합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제품 사진(앞면 및 표시사항이 있는 뒷면) 및 표시도안

■ 해당 시 제출

- ODM 납품 증명서류
- 용기검사 성적서
- 용기재질 동일여부 확인서
-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입증자료 및 입증자료 자가점검표

3.3.4.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안전기준

공기정화용 필터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해당하므로, 항균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보존제는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유형으로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에서 정한 함유금지 및 방출량 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의 승인유예기간은 살생물물질은 '27년, 살생물제품은 ~'29년임(단, '28.12.31 이전에 제품 승인신청시 ~'30년까지 제품 승인유예)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연번	물질명	적용제형 ⁽¹⁾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사형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분사형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분사형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분사형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분사형
6	염화벤잘코늄류 ⁽²⁾	분사형
7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분사형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전제형

주(1) 방향제는 모든 제형에 적용함

(2) 염화벤잘코늄류(C12- 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제품 내 화학물질 방출량⁽¹⁾ 기준〉

연번	물질명	필터형 (mg)
1	이산화티타늄	1,000 이하
2	이산화규소	40 이하
3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70 이하
4	산화아연	50 이하
5	질산은	15 이하
6	아연 피리싸이온	70 이하
7	옥타데실디메틸(3-트리하이드록시실일프로필)암모늄 클로라이드 (Octadecyldimethyl(3-trihydroxysilyl propyl)ammonium chloride, OTPA)	2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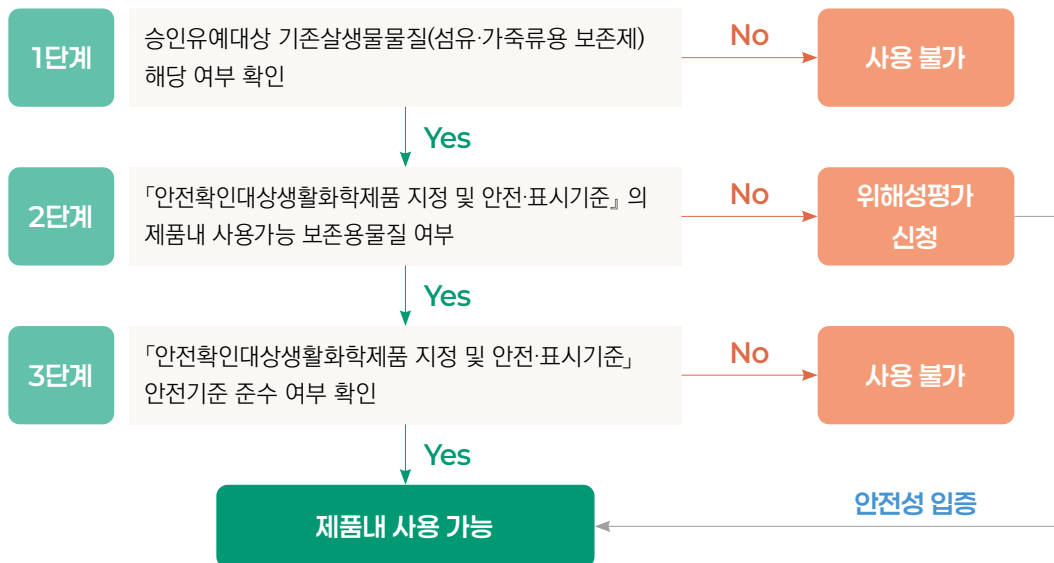
주(1) 공기청정기-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필터에서 탈락된 해당 물질의 양

※ 다만,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해제 시 사용이 불가함

3.3.5. 항균처리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준수 사항

필터형 보존처리제품과 같이 항균 처리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과 함께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필터 제조·수입사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사용된 보존제가 법령에서 허용한 보존제 물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 가능

이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사용가능 보존제물질 목록에 없는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신청을 위해서는 [별지 제9호 서식]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와 함께 작성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제품용도, 사용방법, 작용원리, 제품사진 등)
- 노출 시나리오(사용자, 노출대상, 노출빈도, 교체주기 등)
- 물리·화학적 특성자료(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
-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만성 또는 아만성흡입독성자료 등 독성정보)
- 방출량 테스트 결과 성적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준해 실시한 성적서]
- 기타 안전성 입증에 위해 필요한 자료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는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명칭, 해당 제품유형, 살생물물질명 및 기능,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가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항균 성능 주장으로 ‘99.9% 제거’, ‘특정 균 사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급망 내 정보 전달 체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터 제조·수입사는 성분정보, 처리 목적, 승인 여부 등의 자료를 제품별로 정리·기록하고, 향후 유통사·고객사 등의 요청에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며, 법령상 정보 요청 대응 의무(「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충제 등)의 제조·수입업자 이행 사항

살생물 기능이 주기능인 섬유제품은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며, 이러한 살생물제품(살균제, 살충제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하려는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살생물제품은 인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장 출시 전 승인 절차 이행, 표시기준 준수, 출시 후 안전성 관리 등 단계별 의무가 적용됩니다.

〈살생물제품인 섬유제품 사례 (EU)〉

제품	살생물제품 유형	제품 설명	이미지
항바이러스 티슈	살균제 (PT02)	종이티슈 또는 부직포 기반의 천에 살생물물질을 함침한 제품	
살충처리된 침대 모기장/베드넷	살충제 (PT18)	페메트린 함침 섬유로 제작한 모기 등 해충에 대한 살충 목적	
페메트린 함침 말 담요 (horse rug)	살충제 (PT18)	담요의 본래 기능(보온/자외선 차단 등)보다 “곤충 제어” 기능이 더 전면에 제시	
안티마이트 매트리스커버	살충제 (PT18)	제품이 외부 해충(진드기)을 제어하는 목적	

단계	세부 내용
시장 출시전	- 살생물제품의 유형별 승인유예기간내 제품 승인 - 어린이보호포장 등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준수 - 구매자가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정해진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 - 살생물제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표시·광고에 사용하면 안되고,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위해 방지를 위한 문구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광고에 포함
시장 출시후	- 살생물제품의 새로운 유·위해성,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수량, 함유 살생물물질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을 기록(전자문서 포함)하고 10년간 보관 -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함유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함량을 2년마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보고

4.1 시장 출시 전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제조·수입업자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먼저 자사 제품이 어떤 살생물제품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유형의 승인유예기간 및 승인 요건을 파악하여 승인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승인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별도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유예기간이 끝난 미승인 제품은 제조·수입·판매 모두 금지됩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유예기간		I 그룹	II 그룹	III 그룹	IV 그룹
	물질	~ '23년	~ '24년	~ '27년	~ '29년
	제품	~ '25년	~ '26년	~ '29년	~ '31년
살생물제품 유형		•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살충제 •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체·박제용 보존제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단,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 승인을 신청한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1년 추가 연장(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25.12.31 개정)

제품 승인의 기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준〉

-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 위해성의 최대 정도
 2.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 다른 살생물물질 및 화학물질 등과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4.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의 적정성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될 것
 2.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 ⑤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 ⑥ 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효능을 직접 주장하거나, 유해생물 제거를 제품의 주된 기능으로 제공하는 살생물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1.1. 살생물제품 승인 체계 개요

■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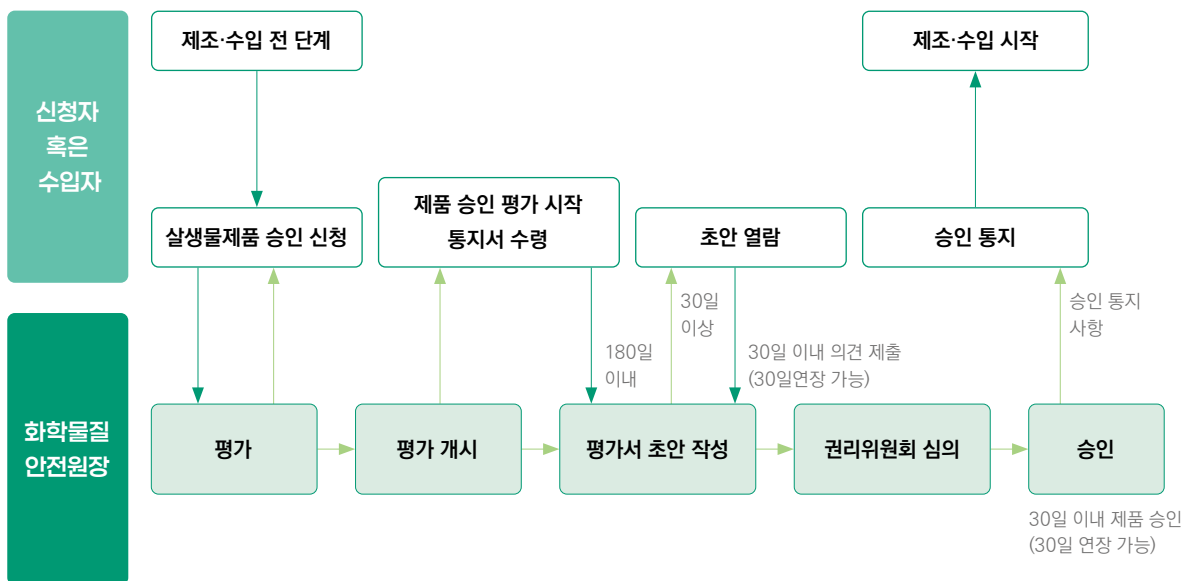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cee.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 나.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다.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4.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라. 효과·효능
 - 마. 분류·표시 및 포장
 5.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 ※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4항 참고)

▣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승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발간한 승인을 위한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용기 구조, 포장 방법, 어린이보호포장 필요 여부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시장 출시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용기 구조, 포장 방법, 어린이보호포장 필요 여부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시장 출시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겉모양

- 가. 외관은 깨끗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한다.
- 나. 구조는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변형·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 다.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 라.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 후 흐름현상이 없어야 한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2) 유리용기
 - 3) 별도 용기가 없는 경우

2. 강도 및 누수

- 가. 용기 강도 시험을 실시할 때 마개 또는 몸체 등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2) 유리용기
 - 3) 별도 용기가 없는 경우
- 나. 용기 누수 시험을 실시할 때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이 액체인 제품의 용기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 2) 개봉 후 재잠금이 불가능한 1회용 포장 용기

「화학제품안전법」 제27조에 따라 제품 겉면 및 포장에 규정된 표시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표시 내용의 구체적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제품의 안전성·효능 정보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정해진 형식과 항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살생물제품 겉면·포장 표시사항〉

- | | | |
|-----------|--------------------------|-------------|
| • 제품명 | •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 • 사용량·용법 |
| • 살생물제품유형 | • 제조·수입자 정보 | • 사용상 주의사항 |
| • 유통기한 | •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대상 제품에 한함) | • 응급처치 |
| • 중량·용량 |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성분) | • 보관 및 폐기방법 |
| • 효과·효능 | • 제품 유해성·위험성 | • 승인번호 |
| | | • 제조번호 |

※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참조

아울러, 표시·광고 문구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그리고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문구, 과장된 효능 표현, 안전성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문구는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2. 시장 출시 후

살생물제품은 승인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유통 과정에서 사후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제품의 유·위해성과 효과·효능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 사용 부주의에 따른 위험성 증가 가능성, 또는 효능 변화 등을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려면 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구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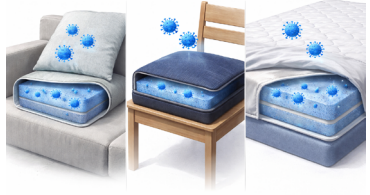
다음으로,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기록 및 보고)에 근거하여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사는 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제품명 및 수량**, ②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③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①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②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에 대한 자료**를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공급망내 살생물제 정보 전달 방법

5.1 살생물제품을 공급받은 경우

〈섬유 제품 생산과정에서 살생물제품을 공급받는 사례〉

구분	취급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처리방법	완제품	
			구분	예시
원사·원단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가공제(액상농축제) 침지(dipping) 또는 패딩(padding)	살생물 처리제품	 항균처리 스포츠웨어 원단, 항바이러스처리 커튼 원단 등
완제품 (신발·가죽 제품)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깔창 원단에 침지(dipping) 또는 패딩(padding)	살생물 처리제품	 ‘항균 처리/위생 보호’ 기능의 운동화 깔창
원단·완제품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항균 코팅액 원단·완제품에 도포	살생물 처리제품	 항균처리 의료용 커버, 항균처리 테이블보/가구용 패브릭

구분	취급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처리방법	완제품	
			구분	예시
발포품 (중간재)· 완제품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원료 혼합 시 보존제 투입 후 발포	살생물 처리제품	 발포품을 완충제, 미생물 증식 억제 목적으로 사용한 쿠션, 매트리스 커버 등
원단· 완제품	살충제, 기피제 처리 원단(모기/ 진드기 방지)	페메트린(permethrin) 등으로 이미 처리된 원단(roll goods)	살생물제품	 모기/진드기 기피 효과가 있는 야외복, 캠핑용 침낭 등

원료 단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은 이후 제조·수입 전 과정에서 기준 정보로 활용되므로, 공급망에서 확보하는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살생물제품은 제품유형별 승인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기반하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 단계에서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여부, 제품유형, 성분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품 정보 제공서(예시 양식)'를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해당 양식에는 제품명, 사용된 살생물물질명, CAS 번호, 승인번호·신고접수번호, 승인·유예 여부, 제품유형, 함량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은 공급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자사 제품에서의 사용 가능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내부 관리 자료로 정리·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처 변경, 성분 조정, 농도 변화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일 양식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갱신하고 적용 범위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확인서와 함께 제공되는 승인통지서 등 증빙자료는 향후 제품 표시·광고 검토, 고객사 질의 대응 및 규제기관 점검 시 필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공급 단계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처 변경, 성분 농도 변동, 승인 범위 변경 등 주요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 절차로 다시 검토하여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살생물제품 확인서 (예시)

000 제품 제조사 귀하

살생물제품 정보	살생물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승인 여부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사
			☐ 승인	-	
			☐ 유예		

살생물제품 정보	살생물 물질명	CAS No.	살생물제품유 형	승인 여부	승인번호/신고접 수번호	물질 제조· 수입사	살생물제품내 살생물물질 함량(%)
				☐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번호		
				☐ 유예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접수번호		
				☐ 면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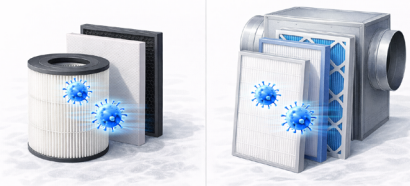
위의 살생물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품이며,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도 적법한 물질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기업 대표 ○○○ (인)

첨부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등

5.2 살생물처리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섬유 제품 생산과정에서 살생물처리제품을 공급받는 사례〉

사례	공급받는 형태	완제품 예시
항균 처리된 원단(roll goods)을 구매해 의류·침구를 제작	항균 처리·방취 가공이 완료된 직물 또는 편물 원단	 항균처리된 기능성 속옷, 항균처리된 스포츠웨어 등
항균 처리된 안감·라이닝 원단을 부자재로 공급받아 신발 제작	항균 처리 메쉬, 항균 처리 트리코트 등 안감 전용 원단	 일반 운동화, 작업화(안감 위생성 강조) 등
항균·방취 처리된 솜, 패딩제를 사용한 침구류	항균 처리 가공된 폴리에스터 솜, 패딩재	 항균 처리된 이불, 항균 처리된 베개 등
항균 처리된 부직포를 공급받아 필터를 제작하는 경우	항균 처리된 부직포	 공기청정기 필터, 환기 시스템 필터 등

살생물처리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처리 공정과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 단계에서 처리 목적, 사용 성분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업계 전반에서 표준화된 확인서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에는 업체가 '살생물처리제품 확인서(예시 양식)' 등을 활용하여 공급망 내 정보 전달을 문서화하는 방식의 관리체계 도입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제품의 표시·광고 검토, 규제 대응, 고객사 요청사항 처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공급받는 처리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는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에는 제품별 처리 목적,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명칭, 제품 유형, 승인 또는 승인유예 여부 등의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명칭, CAS 번호, 승인번호, 제품 내 함량 등 성분 수준의 정보가 제시되므로, 수요 업체는 이를 통해 수요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와 표시·광고 적용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리 목적과 실제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 유형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며, 처리 목적을 벗어난 성능 주장을 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리방법 및 처리범위가 확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기능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주장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급사가 제시한 처리정보 및 성분정보는 이후 표시기준 적용, 기능 표현 검토, 고객사 또는 기관의 정보 요구 시 대응 근거로 활용되므로, 관련 문서는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급망 내에서 처리제품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항목으로서, 제조·수입사는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첨부자료(승인통지서, 입증자료 등)의 진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확인서 (예시)

000 제품 제조사 귀하

제품명	처리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대한 정보		
	승인여부	살생물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물질명	살생물물질 CAS No.	제품내 살생물 물질 함량(%)
	☐ 승인 ☐ 유예 ☐ 외국정부 승인·확인					

살생물처리 목적 및 처리방법

광고 및 주장 문구	
1	
2	
3	
4	

위의 살생물처리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였고, 처리제품에 부합하는 주장(광고 등)을 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이며, 적법한 살생물제품과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기업 대표 ○○○ (인)

첨부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외국정부 승인·확인 입증자료 등

통신 판매업자·중개업자 이행 사항

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섬유제품 중 직접적인 살균·살충 등의 살생물 기능이 없는 제품은 살생물제품이 아니며, 보존제를 사용한 대부분 의류·침구류·수건·필터 등 섬유제품은 살생물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접적으로 섬유제품이 살균·살충의 목적 및 용도를 가지거나, 살생물 기능이 주된 목적(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인 경우 등)으로 표시·광고 또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해당 섬유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게 된다면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과 제품 자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살생물처리제품이 과대광고나 주장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표시와 광고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하는 제품이 기능성 의류, 침구, 수건 등 어느 제품군에 속하더라도, 제품 제조자가 사용한 살생물 효과와 효능에 대한 광고나 주장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자 또는 중개 플랫폼이 제조업체의 표시·광고내용과 다른 표현으로 '살균 효과가 있다', '99.9% 항균' 등과 같은 새로운 주장을 덧붙이거나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킨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이 판매자 측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은 섬유제품 제조·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의 살생물 효과 및 효능에 대해 올바른 근거를 바탕으로 표시·광고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추가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섬유제품의 공급망 전반에서 표시·광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과대광고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6.1 통신 판매업자·중개업자의 의무사항

섬유제품 제조·수입자가 섬유 원사·원단 또는 완제품을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를 한 것이 되고 이를 업으로 하였다면 통신판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2호 및 3호).

만일 섬유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섬유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통신·판매하지 않고, 유통 사업자를 통해서 판매하였다면 유통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유통 사업자에게 섬유제품을 제공하면서, 「화학제품안전법」에 부합하는 광고와 주장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통 사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하는 광고 및 주장을 했고 이 내용이 섬유제품 제조사가 제공한 잘못된 광고 및 주장에 근거한다면, 유통 사업자와 제품 제조사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되며, 유통 사업자는 제품 제조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품 제조사는 섬유제품에 대한 광고나 주장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정확히 하여, 유통 사업자의 잘못된 광고 및 주장으로 인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 제조사가 자신의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만들어 유통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비록 제품 제조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광고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통 사업자의 잘못된 광고 및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이로 인해 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살생물제품 판매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섬유제품 중에는 살균제, 살충제 등의 살생물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살생물제품이 승인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인된 내역과 다른 주장(효능, 용도 등)을 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제품의 이용자의 사용 후기에 회신하는 경우도 광고에 해당하는 만큼 살생물제품의 벗어나는 주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한 광고 및 주장 때문에 살생물처리제품이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추가한 광고 및 주장이 살생물제품의 승인된 바와 다를 경우도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도 통신판매업자가 집니다.

▣ 살생물처리제품 판매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인 섬유제품을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인 섬유제품에 대하여 임의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광고 및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이 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현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즉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 위와 같은 광고와 주장을 하게 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화학제품안전법」에도 저촉됩니다.

더 나아가 통신판매업자가 제품 제조자가 주장하지 않은 살생물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일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인 섬유제품에서의 살생물 효과를 주장한다면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 제조자가 사용하는 광고 및 주장을 넘어서 광고 및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6.2 유통·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인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1항).

그러나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이면서 동시에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때에는 통신판매업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3항).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관련 책임을 진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도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3항).

※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 여부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7호)을 참고해 주십시오.

▣ 상품등록시 주의사항 고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와 상품정보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통신판매 의뢰자와 함께 연대책임이 발생하게 되며(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를 위해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재화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품정보 등록할 때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고지한다면, 통신판매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사이버 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이버 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준수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행위를 약관에 근거하여 중단할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상품정보 등록 전후로 다음 내용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등록 전에는 반드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 ① 통신판매업자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의 **표시·광고**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등록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사항
- ② ①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등)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등록한 **상품**정보가 「화학제품안전법」 상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약관에 근거하여 중개 중단 등 제재**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약관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상품등록시 사전고지는 해당 약관의 핵심 내용과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계약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통신판매업자의 잘못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광고 및 주장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신판매 중개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승인 또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생물제품,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중개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행정기관이 통신판매업자의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의 위반을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중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약관의 구성에 정해진 형태는 없지만,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① **제재 목적의 정당성**, ② **제재 사유의 객관성**, ③ **제재 내용의 적정성**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자의적인 제재를 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정당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약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약관 내용 중 “금지행위”와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는 통신판매업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에 나누어 규정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자의 “제재조치”는 “제재절차”와 구분하여 규정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약관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약관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약관에 명확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시 :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약관’ 중 **관련 내용 예시**

제0조(통신판매업자의 책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의무)

- ① 사이버몰에서 재화와 용역의 판매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가능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와 용역에 관한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정보 관련 광고 및 주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통신판매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4항) 이와 같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재산적 책임을 부담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 ②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법령과 약관 위반 등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행위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명 요청에 답변** 및 필요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법령과 약관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또는 동 약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0조(금지행위)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부적합 상품의 등록·판매를 금지**합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

제0조(제재 절차 및 조치)

-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자의 금지행위를 다음의 각호의 방법으로 인지하였을 경우, 제재조치에 앞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단체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의 요청
 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의 등록상품 관리
 3. 사이버몰 이용자의 신고
 4. 기타 제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요청내용이 위해 방지의 목적인 경우, 소명에 앞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해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0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 유형	금지행위 유형	비고
1. 통신판매중개업자 개선권고		경미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2. 서비스 제한 1(전시, 검색, 광고 제한)		중요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3. 서비스 제한 2(등록, 판매, 중개 제한)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및 소비자 피해정보에 따른 중개제한 요청 등에 근거
4. 법령 위반사항 공표(거래자 개별공지, 일괄공표)		• 소비자 위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거래기록에 근거한 개별통지 • 소비자 위해가능성이 낮지만, 주의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일괄공표
5. 거래취소(환불 포함)		중대한 법률위반
6.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계약해지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통신판매중개자 책임발생
7. 재가입 차단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통신판매중개자 책임발생 및 상습기준 초과

※ 안전·표시기준 위반의 정도, 소비자 위해가능성의 정도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 등 전문기관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6.3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행위를 통한 「화학제품안전법」 준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입력하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중 잘못된 광고 및 주장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광고 및 주장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정보의 삭제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정정 요청하여야 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2항).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2항에서는 동법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을 금지하는데, ①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②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발견하는 즉시 삭제의무**는 **사용약관**의 금지행위 및 제재절차 및 조치 내용에 **반영**하고 실행함으로써 이행이 가능하고,
-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하역금 상품정보를 토대로 리콜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4항).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상당한 주의**인 동시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행위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4항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유발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주기적인 관리행위는 사이버 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4 판매자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조문 보기

■ 제조·수입자의 법 제20조, 제28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 등 의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28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을 받은 경우, 제품승인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한 제품임에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과도한 주장을 하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법 제34조에 따른 표시·광고의 제한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등 법 제34조의 표시·광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법 제3조제8호 에 따라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미승인 살생물제품 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4조에 따른 표시·광고의 제한은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도 적용되며, 상기 내 용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등 의 문구의 사용도 금하고 있음

만약 살생물제품에 해당함에도 **제품승인등**(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26에 따라 제품승인등이 취소되거나 제조·수입이 중지 된 살생물제품, 법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법 제 37조에 따른 회수명령 및 판매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56조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판매·유통자의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승인등(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거나, 주장·광고하는 살생물제품유형(살충제, 살균제, 보 존제 등)에 부합하게 승인을 받지 않아 미승인 살생물제품, 법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제품, 법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명령 및 판매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58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는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 뿐 아니라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생활화학 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조·수입·판매·유통자에게도 적용

살생물처리한 제품임에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과도한 주장을 하면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임의로 제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변경하면 그 책임이 판매자에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한편,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하는 자에게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의 내용〉

항	각호	각호의 내용
①항	1.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가.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법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제10조제4항) 라.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제10조제8항)
	2. 살생물물질의 판매 등의 금지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법 제17조)
	3. 살생물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법 제26조) 다.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법 제27조)
	4.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법 제28조)
②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명령 등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판매 등이 금지되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 37조**에 따라 **회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

또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 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는 **법 제52조의 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불이행 시 행정 조치

7.1 섬유제품 제조사 및 공급사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학제품안전법」 처벌 조항

7.1.1. 제품이 살생물제품인 경우

① 법 제20조 및 제26조 등 제품승인 위반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승인 취소 또는 제조·수입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7조 변경승인 및 표시기준 등 위반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정보, 효과·효능 등의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 받는 등 변경승인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법 제34조 표시·광고의 제한 위반

살생물제품인 섬유제품에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광고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효과·효능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④ 법 제49조 기록·보존·보고의 위반

법 제36조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법 제49조에 따라 제조·수입한 살생물제품의 명칭·제품명 및 수량,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에 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고,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을 2년마다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록·보존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고한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6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1.2. 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① 법 제28조 안전·표시기준 위반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또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및 승인유예 중인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 요구되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게 표시한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법 제30조 정보 제공 등 위반

섬유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섬유제품 제조사가 섬유제품을 구성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처리제품 제조·수입자나 부품 공급사에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법 제34조 표시·광고의 제한 위반

살생물처리제품인 섬유제품을 살생물제품처럼 광고하거나 주장한 경우 법 제58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④ 법 제49조 기록·보존의 위반

법 제49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에 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6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Part

4

오인·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 1 부적합 광고 사례
- 2 적합한 주장 및 표시·광고 방법

부적합 광고 사례

1.1 섬유제품 중 살생물처리 표시·광고 부적합 사례

① 원사 제품



항균 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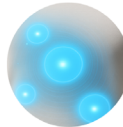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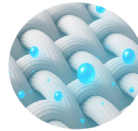


유해 세균 억제

원사 자체에 은이온을 함유시켜
폐렴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유해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흡한 속건

피부의 땀을 흡수한 뒤
빠르게 발산시켜
냄새 걱정이 없습니다.



강력한 항균 지속력

무기 항균제를 사용한
원사 자체의 항균 기능으로
세탁 후에도 항균 기능이 99.95%
유지됩니다.

부적합 문구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에 해당	‘유해 세균 억제’라는 표현과 함께 ‘폐렴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균주명을 직접 언급하여, 해당 미생물의 작용을 억제·제거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장
	살생물기능이 주기능인 경우에 해당	‘항균 원사’와 같이 제품 명칭에 ‘항균’ 용어를 사용하여,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핵심 기능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 존재 ‘강력한 항균 지속력’, ‘항균 기능 99.95%’ 등과 같이 살생물 기능을 구체적인 수치(99.95%)로 강조하고 있어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원사 자체의 항균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제품 보호 목적을 넘어 살생물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문구
개선안	개선 원칙	① 살생물 기능 → 제품 보호 목적 중심으로 한정 ② 대중의 건강 보호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전면 삭제 ③ 구체적 효능 수치(99.95%) 사용 금지
	개선 문구 예시	“유해 세균 억제” → “원사 소재의 미생물 번식 억제를 위한 항균 처리”
		“강력한 항균 지속력” “항균 기능 99.95%” → “보관·사용 중 원사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항균 처리”
		“항균 원사” → “항균 처리된 원사”
		“폐렴구균·황색포도상구균” 등 → 특정 균주 언급 삭제

② 원단 제품



부적합 문구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에 해당	• ‘인체 안전’, ‘피부를 보호하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이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주장 • ‘항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 ‘녹농균’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특정 균주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며 제품 보호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음
	살생물기능이 주기능인 경우에 해당	• ‘Antibacterial 99.9%’ 등과 같이 구체적인 효능 수치(99.9%) 제시 • 복수의 특정 균주에 대해 동일한 제거 효과(99.9%)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광고에 해당 • ‘항균 원단’이라는 제품 명칭을 사용하여 살생물 기능이 핵심 기능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 존재
개선안	개선 원칙	① 인체·건강 보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삭제 ② 살생물 기능 → 제품 보호 목적으로 한정 ③ 구체적 효능 수치 및 특정 균주 언급 등 삭제
	개선 문구 예시	“인체 안전” “피부를 보호하세요” → “사용 또는 보관의 과정에서 원단의 상태 유지를 위하여 항균 처리하였습니다.”
		“항균 원단” → “천연소재에 항균 처리된 원단”
		“Antibacterial 99.9%” “항색포도상구균·폐렴간균· 녹농균” 등 → 구체적인 수치 및 특정 균주 언급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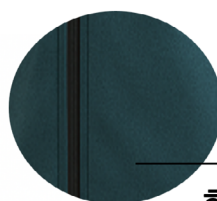
③ 완제품 (공기정화용 필터)



부적합 문구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에 해당	‘공기청정기 항균 에어 필터’, ‘깨끗한 공기의 완성’, ‘공기 속 숨어있는 바이러스, 이젠 안심하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기 중 미생물을 제거함으로써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주장 - 특히 ‘안심하세요’,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은 제품 사용이 사람의 건강 보호와 직결되는 효과를 갖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여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에 해당
	살생물기능이 주기능인 경우에 해당	‘세균·곰팡이·바이러스 99.9% 사멸’과 같이 유해생물을 제거·사멸 하는 효과 주장 ‘항균 99.9% 효과’, ‘병원균 99.9% 제거’, ‘바이러스 99.9% 감소’ 등 구체적인 수치(99.9%)로 강조하여 필터의 여과 기능보다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인 것처럼 표현 ‘진짜 항균 필터’와 같은 표현은 살생물 기능이 해당 제품의 본질적 가치임을 강조하는 문구에 해당
개선안	개선 원칙	① 인체 보호·안심·무해 등 건강보호 직접 표현 삭제 ② 살생물 기능 → 부수적 효과 또는 제품 보호 목적 한정 ③ 구체적 효능 수치 및 유해 생물 제거 주장 금지
	개선 문구 예시	“공기 속 바이러스, 이젠 안심하세요.” → “필터 자체에 미생물 번식 억제를 위한 항균 처리”
		“세균·곰팡이·바이러스 99.9% 사멸” → “필터 성능 유지를 위한 항균 처리”
		“진짜 항균 필터” “항균 에어 필터” → “항균 처리된 에어 필터” “제품 보호 목적의 항균 처리된 에어 필터”

④ 완제품 (의류)

**항균
소취**
기능성 등산복
항상 쾌적하게
항상 산뜻하게



**항균 가공으로
세균 번식 억제**

50회 세탁 후에도 99.9% 살균 효과
뛰어난 항균 효력 지속성

피부 알레르기 방지
민감한 피부 보호

부적합 문구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에 해당	‘민감한 피부 보호’, ‘피부 알레르기 방지’, ‘항상 쾌적하게·산뜻하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 착용을 통해 사용자의 신체(피부)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주장
	살생물기능이 주기능인 경우에 해당	‘항균’을 제품의 핵심 문구로 강조하고, ‘세균 번식 억제’, ‘99.9% 살균 효과’ 등 살생물 기능을 구체적인 효능 수치로 반복 제시하여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된 기능 또는 핵심 가치로 인식될 우려 존재 ‘항균 효력 지속성’ 등과 같이 살생물 효과의 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착용 기간 전반에 걸쳐 살생물 작용이 계속 발현되는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음 착용자의 위생·건강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즉 살생물 기능이 주기능인 제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개선안	개선 원칙	① 피부 보호·알레르기 방지 등 건강 보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삭제 ② 살생물 기능 → 의류의 보조적 제품 보호 수준으로 한정 ③ 구체적 살균 수치(99.9%) 및 효과 지속성 강조 금지
	개선 문구 예시	“민감한 피부 보호” “피부 알레르기 방지”  “옷의 산뜻한 착용감을 위해, 소재(원단)에 보존제(항균) 처리”
		“항균·소취 기능성 등산복”  “항균 처리된 등산복”
		“세균 번식 억제” “99.9% 살균 효과”  “원단 보존제 처리로 원단 상태 보존” 또는 “항균 처리된 등산복”

⑤ 완제품 (침구류)



세균, 곰팡이, 진드기 차단

99.9% 황색포도상구균 억제기능
99.9% 폐렴균 억제기능

항균 베개
항균 이불

부적합 문구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에 해당	• ‘항균 베개·항균 이불’, ‘세균·곰팡이·진드기 차단’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수면 중 사용자를 유해생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주장 • 침구류는 수면 중 장시간 얼굴·호흡기·피부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제품으로,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위생 관리 설명을 넘어 사용자의 건강 보호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주장에 해당
	살생물기능이 주기능인 경우에 해당	• ‘99% 황색포도상구균 억제’, ‘99% 폐렴균 억제’ 등 구체적인 수치와 특정 균주명을 제시하여 살생물 효과를 강조 • 세균·곰팡이·진드기 등 복수의 유해 생물을 동시에 대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살생물 기능이 침구류의 핵심 기능 또는 주된 가치로 인식될 우려 존재, 제품의 본래 기능보다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요 기능으로 오인 가능
개선안	개선 원칙	① 건강 보호로 직결되는 표현 삭제 ② 살생물 기능 → 침구 내부(표면 또는 솜)관리의 보조적 효과로 한정 ③ 구체적 수치 및 특정 균주·해충 언급 금지
	개선 문구 예시	“항균 베개” “항균 이불” ➡ “항균 처리된 베개/이불” 또는 “제품 자체의 보호 목적으로 항균 처리된 침구”
		“세균·곰팡이·진드기 차단” ➡ “침구의 미생물 억제”
		“99% 황색포도상구균·폐렴균 억제” ➡ (삭제)

적합한 주장 및 표시·광고 방법

2.1 살생물처리제품의 적합한 표시·광고 사례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의 주된 기능을 보호하기위한 부수적 목적 범위 내에서만 기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제품이 스스로 '살균 한다'거나 '유해생물을 제거한다'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소재의 품질 유지, 제품 보존 등에 한정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아래는 제품유형별로 활용 가능한 적합 문구 사례입니다.

2.1.1. 원사 제품(원사 자체의 품질·내구성·위생 상태 유지에 한정)

- 은·아연 이온 기술로 처리된 제품으로 섬유, 실, 직물, 고분자, 소재, 표면 등 손상 시킬 수 있는 미생물로부터 보호됩니다.
- 미생물로 인한 변질을 줄여 원사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보존 처리를 통해 보관 및 가공 과정에서의 위생적 상태 유지를 돕습니다.
- 원사 표면의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소재 특성의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 장기 보관 시에도 원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감소시켜 줍니다.

2.1.2. 원단 제품(원단 자체의 청결·내구성·보존 목적 강조)

- 원단 표면의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여 쾌적한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보존 처리를 통해 원단의 외관 및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완화합니다.
- 가공 과정에서 적용된 처리로 원단 내 위생적 환경 유지에 기여합니다.
- 미생물 증식으로 인한 변색·냄새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장시간 사용 및 보관 시에도 원단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구조적 설계 및 처리 기술을 통해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형성합니다.

2.1.3. 완제품(완제품 자체 보호, 부품·소재 수준에서의 관리 강조)

- 필터의 미생물 성장 억제를 위해 항균 처리
- 황화구리로 항균 처리하여 필터 내 유해생물 번식 억제
- 항균처리된 원단을 사용하여 제품에 곰팡이가 잘 자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제품 내 소재 보호를 위해 미생물 성장 억제 처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보존 처리를 통해 제품 사용 중 위생적 상태 유지를 돕습니다.
- 필터 및 내부 소재의 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항균 처리된 소재를 사용하여 곰팡이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 제품 구성 소재의 특성을 고려한 보존 처리로 장기간 안정적인 성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 보관 및 사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관련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art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항균원사의 경우 미국 FIFRA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EU BPR은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이 가능한지요?

☞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원사를 살생물제품인지 처리제품인지를 규정하기 보다는 **살생물제품으로써의 효과·효능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체 스스로 살생물제품의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따른 **효과·효능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2 보존제의 효과·효능 시험에 대한 공인 시험법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방법 자료집-보존제류”의 경우 다양한 보존제 제품에 대한 효과·효능 기준 및 시험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심으로 기재되어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법은 ‘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방법 자료집-보존제-2026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항균 99.9% 등의 구체적 수치는 표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 살생물 기능을 주장하면서 항균 99.9% 등의 구체적인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는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인** 경우에 해당하여 **살생물제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섬유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의 유효기간과 처리제품(섬유제품 자체)업체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섬유·가죽용 보존제의 경우 살생물물질은 ‘27년, 제품은 ‘29년까지 승인받아야 하고, **처리제품은 ‘31년까지 안전·표시기준에 대한 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물질이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고 **물질·제품이 승인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현재 사용하는 물질이 기존살생물물질이 아닌 경우 처리제품에 대한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살생물제의 제조·수입업체가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거나, 아니면 적법한 승인절차를 밟고 있거나 예정에 있는 업체의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살생물물질 승인유효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유효기간 1년 추가 연장(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25.12.31 개정)되며, 그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적용 또한 함께 연장

Q.5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통기간 종료 후 표시·광고 규제의 시행 시점이 제조·수입일 기준인지, 판매일 기준인지?

❖ **(제조·수입 기준)**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경과조치 기간까지**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가능합니다.

❖ **(판매·증여 기준)** 상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및 증여, 또는 판매 및 증여를 위한 진열, 보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경과조치기간(처리제품 제조·수입)이 종료한 이후 6개월까지 제품의 자유로운 판매·유통의 의미가 아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 제품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 살생물처리제품의 기능 어필 시,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이 처리제품의 위험성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되며, 이 부분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는 없나요?

❖ 현재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알리는 경우,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나노물질 함유 사실,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는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7 섬유 완제품 제조사가 살생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소재는?

❖ 섬유 등 살생물처리제품에 미승인 살생물물질·제품이 사용된 경우 **살생물물질·제품 제조·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도 법 제28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8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살생물물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제품 내에서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물질이 있다면 이는 살생물물질에 해당합니다.

Q.9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구성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둘다 준수해야 하는지?

❖ 두 제품 모두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므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예. 항균처리된 섬유와 그 섬유로 만든 기능성(항균처리 기능) 의류는 각각 처리제품의 이행사항 준수 필요).

Q.10 섬유 완제품에 해충 방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살생물제를 처리하고, 해당 기능(해충 제거·억제 효과)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해당 섬유제품은 살생물제품 승인 대상에 해당하나요?

❖ 섬유제품에 해충의 제거·억제 등의 목적으로 살생물제를 사용하였고 그 효과가 있다면 섬유제품은 살충제에 해당하여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11 필터 자체의 미생물 증식 방지 및 위생 유지를 목적으로 항균 처리를 한 경우, 해당 처리에 사용된 살생물제는 어떤 제품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요?

❖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필터에 항균처리를 하는 경우 처리한 살생물제는 제품유형 중 섬유·가죽류용 보존제에 해당함

※ 다만, 이는 현재 파악된 필터 내 살생물제 처리방법 및 효과에 따른 제품유형 분류이며, 추후 다른 방법 및 효과가 있는 경우 해당 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섬유제품편)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044-201-6828
디자인·인쇄	이안테크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섬유제품편